

2010年 2月

석사학위 논문

한국과 중국 대학교의 평생교육체제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반효비

한국과 중국 대학교의 평생교육체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2010年 2月

조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반효비

한국과 중국 대학교의 평생교육체제 비교연구

지도교수 박희서

이 논문을 행정학과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반효비

반효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용섭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민창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희서 (인)

200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대학평생교육	5
1. 평생교육의 의의	5
2. 대학평생교육의 개념	14
3. 대학평생교육의 필요성	19
제2절 대학평생교육의 유형	21
1. 학습자의 참여 유형	21
2. 대학교평생교육의 유형	25
제3절 선행연구	28
제4절 분석틀의 설정	29

1. 이념적 측면	29
2. 법제도 측면	30
3. 학사운영 측면	30
4. 행·재정적 지원 측면	31
제3장 한국 대학평생교육체제	32
제1절 교육이념	32
제2절 법제도의 측면	33
제3절 교육기관과 학사운영의 측면	35
1. 대학교평생교육 실시기관	35
2. 대학교평생교육 과정형태	36
3. 대학교평생교육 학사운영	37
제4절 행·재정지원 측면	41
1. 대학평생교육의 행정체제	41
2. 평생교육사와 대학평생교육의 교수요원	43
3. 대학평생교육 재정 지원	44
제4장 중국 대학평생교육체제	46
제1절 교육이념	46

제2절	법제도의 측면	47
제3절	교육기관과 학사운영의 측면	49
1.	대학평생교육기관	49
2.	대학평생교육 과정형태	49
3.	대학평생교육 학사운영	50
제4절	행·재정지원 측면	51
1.	행정체제 현황	51
2.	대학평생교육 교수요원	53
3.	대학평생교육 재정 지원	53
제5장	한·중 대학평생교육체제 비교	55
제1절	양국 대학평생교육이념 비교분석	55
1.	개념 사용 측면	55
2.	교육 기본 이념 측면	56
3.	평생교육의 이념 측면	57
제2절	양국 대학평생교육의 법규와 제도 비교분석	58
제3절	양국 대학평생교육기관 및 학사운영 비교분석	59
1.	대학평생교육기관 비교	60
2.	대학평생교육 과정형태 비교	60
3.	대학평생교육 학사운영 비교	61

제4절	양국 대학평생교육 행·재정 지원 비교 분석	61
제6장	요약 및 결론	63
참고문헌	68

표목차

<표1>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정보센터 학사운영	39
<표2> 한국 한국교육과학기술부 조직 직제	42
<표3> 중국 교육부 직제 일람	51

그림 목차

<그림1> 한국의 평생교육법 기본 체계	35
-----------------------------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Pan XiaoFei

Advisor : Prof. Park Hwie-Seo Ph.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modern society in 21st century is a globalized, informative, un-stop changing society. As time goes by, people as an individual beings, can not live just by formal education. Besides, in the informative society, many information, knowledge and technology needed keeping studied and used after the colleague government. As long as the development of times, Chinese government which is a developing country will achieve lifelong education academic system around 2010.

The university which is creating and spreading knowledge will play the leading role and be the example on the process of lifelong education system. The complete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will be the significant foundation of country' s lifelong education system. The Chinese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 especially the founding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has achieved the practiced efforts.

Korea, as the neighbor of china, has taken many experience from western countries and has many similar factors in both society and cultural area with china. So it is much more a compared and reference country than some other western country. The policy of Korea lifelong education system or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especially the successfully experience will affect a lot for Chinese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Meanwhile, some problems occurred in Korea university students lifelong education is an vivid example for setting and developing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for china, it has great enlightenment for the displaying of china' s lifelong education system.

The comparison of Korea & Chinese lifelong education system, is based on the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which is researching its necessity and association. From the analysis of Korea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and Chinese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will inspire Chinese people to find the solution and direction of Chinese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현대사회는 글로벌화, 정보화 사회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정시기에 걸쳐 시행된 형식적인 학교교육만으로는 사회지식인으로서 살 수 없다. 또는,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끝난 후에도 평생에 걸쳐 배우지 않을 수 없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개발도상국인 중국 정부는 2010년 전후로 평생학습체제를 이룰 것으로 밝혔다. 지식을 창출하고 전파하는 대학교는 평생교육체제를 달성한 과정에서 선도적·시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완벽한 대학평생교육체제의 확립은 국가의 평생교육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이 평생교육체제, 특히 대학평생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국의 이웃나라인 한국은 서양 선진국가의 경험을 수용하여 발전하고, 사회적, 문화적인 면에서 중국과 공통적인 여건을 기지고 있으므로 서양의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실질적인 비교와 참고가 될 수 있는 국가이다.

한국에서 처음에는 평생교육이란 개념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춘천에서의 「평생교육 발전 세미나」에서부터라고 알려졌으나 실제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1960년대부터 자주 거론되었던 논제이다. 해방 후 한국교육은 세계에서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양적·외형적으로는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교육환경 전체가 비인간화함으로써 총체적으로 한국교육은 도덕적 감화력을 거의 상실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이 같은 위기적 상황을 가져 오게 한 요인으로서, 한국 교육개발원은 교육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저하, 교원의 자질 및 질적 저하, 교육재원의 제약과 영세화,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정체와 낙후성, 교육격차의 심화 등 5가지를 지적하였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이처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소개되고 거기에 대한 일부 교육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게 된 배경에는 그 이념적 성격에 대한

공감 이외에도, 그럴 만한 한국적 특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기에 나타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그때의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평생교육에의 요청을 절감케 한 또 하나의 요인은 국민의 의식과 생활면에서 천천히 확고한 신념체계로 자리잡혀가고 있던 민주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교육영역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은 획일주의적, 독선주의적, 엘리트주의적 교육체계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곳곳에서 갈등과 저항에 부딪치게 된 전통적 교육체계에 대신할 무엇인가 새로운 혁신적 교육이념의 출현을 갈망하는 소리가 높이고 있는 점을 가과할 수 없었다.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수요의 증대에 따라 갈 수 없게 된 국가재정이 그 한계 상황적 위기의 탈출구로서 평생교육체계의 조직 모델을 갈망하게 된 것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또한 산업계 지도층 인사들 간에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관심도가 최대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학습심리학, 집단상담, 행동과학, 교육공학 등의 학문연구 결과에서도 진전을 많이 보게 되었다. 즉 이들 학문의 연구결과는 성인학습에 어린 시절 학교교육 하지 못하는 교육적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은 단직 평생교육체계의 핵심이라 할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함으로써만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교육학도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도 광범위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전례없이 평생교육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이고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 다음 3번째로 평생교육을 법률로 제정한 국가이다. 한국의 대학교는 평생교육을 처음 도입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70년대 평생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던 한국의 계명대학은 자체 내 시설과 우수한 자원을 사람에게 제공하고 개방하였다. 그것 이후에는 기타 대학에서도 지역사회 사람을 위한 시민가좌 형태의 대학개방 프로그램이 개설 되었다. 1980년대는 “평생교육의 시대”라고 할 만큼 이 분야에서 각종 변화가 일어났다. 1980년에는 헌법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조항이 규정되고, 1982년에는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1983년에는 「사회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윤미란, 1998) 이러한 일련의 법적 기초를 토대로 대학평생교육은 새로운 시기를 바뀌기 맞이하였고, 이화여대를 시작하여 한국 대학 및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원은 빠

르게 팽창되었다. 특히 1999년에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대학평생교육 시설 및 변경에 따른 신고제가 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평생교육도 활성화되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사회교육과 통신교육의 개념을 도입한지 벌써 오래되었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93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中國教育改革和發展綱要」중에는 “성인 교육은 전통 학교교육이 평생교육방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교육제도이다” 라고 밝혔다. 1995년 실시된 「中華人民共和國教育法」에는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의 요구에 따라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각종 교육의 발전을 협동적으로 추진하여 평생교육체계를 창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개념은 아직까지도 학자들만이 연구와 토론을 하였고, 실생활에의 평생교육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는 개념이다. 중국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의 개념보다 성인교육 또는 계속교육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이 중국 경제성장에 영감을 주었던 것처럼 교육 역시 중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평생교육 정책이나 대학평생교육 정책은, 특히 이 분야에서 성공 경험은 중국의 평생교육과 대학평생교육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평생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발전 과제들은 혹시 중국의 대학평생교육체제 정립과 발전 방향 모색 및 그 운영에 큰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 평생교육 체제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대학평생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학평생교육체제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중국 대학평생교육의 방향설정과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개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것이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학교평생교육체제를 비교 분석하여 중국 대학교평생교육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나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대학평생교육 이념적 측면에 분석했다. 이념측면에서는 주로 개념사용측면, 교육기본이념측면, 평생교육의 이념 측면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둘째, 대학평생교육의 법규와 제도 비교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평생교육법 적용하고있다. 중국에서는 성인교육개혁과발전에관한결정(평생교육법 제정 중)을 적용된다.

셋째, 대학평생교육기관 및 학사운영 비교 분석. 주로 대학평생교육 기관, 과정 형태, 학사운영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넷째, 대학평생교육의 행정과재정지원 비교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방법과 비교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참고문헌에서는 국내·외 각종 평생교육, 특히 대학평생교육에 관한 각종 논문, 보고서 및 통계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 대학평생교육의 발전과 변천과정 및 현황을 고찰하고, 대학평생교육 체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중국대학의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대학평생교육

1. 평생교육의 의의

1) 평생교육의 개념

요즘 평생교육은 새로운 사회의 교육적 이상향인 유토피아, 또는 학교교육 본위의 교육 체제에 대한 대안교육의 이념으로 해석된다. 평생교육이란 ‘오람에서 무덤까지’의 배움이 다되는 교육이념으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또 ‘사회교육’의 삼위일체적 교육 통합론으로 해석 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에 대한 교육이념과 모델로서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교육이념과 모델로서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평생교육이므로 특정 영역이나 특정 부문을 지칭하는 교육의 실체적 개념만은 아니다.

평생교육은 교육 그 자체가 동의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육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본질적 이념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은 이러한 점에서 사회교육이나 학교교육과 같이 특징의 실체적 영역을 지니는 명확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들 모두를 하나로 통합한 이상향적인 이념의 교육 성격인 것이다(이양교,2002).

이러한 원인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은 혼란과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사회교육과 동의어로 혼용되고 있다. 물론 평생교육의 이념이 강조하고 중요시되는 영역이 사회교육 부문임에는 틀림없다. 그로 인해 두 가지 개념이 마치 동의어적인 것처럼 인식되며 같은 용어로 쓰고 있는 잘못이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은 구별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은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상위의 총체적 교육이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교육은 그 한 영역으로서 학교교육 이외의 비정형적인 교육 부문을 의미하는 하위적 부분의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이 개념은 논자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합의된 평생교육의 개념정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생교육을 주장하였던 랑

그랑(P.Lengrand)과 데이브(R.H Dave)의 견해를 좀더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랑그랑(P. Lengrand)은 평생교육의 개념을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통합”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데이브(R.H Dave)는 평생교육을 “개인 또는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동안에 걸쳐 연장·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데이브는 이러한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을 보다 종합적이며 분석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가지로 분류·정리한 바 있다.

① 평생교육의 개념이 의미 있는 세 가지 단어는 생(Life)과 평생(Life-long), 그리고 교육(Education)이다. 평생교육의 의미와 그 범위는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이미 포함된 뜻과 해석에 따라 규정된다.② 교육은 학교에서 받은 교육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한 과정이다. 평생교육은 한 개인의 전체 생활의 영역과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③ 평생교육은 반드시 성인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령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그 밖의 모든 단체의 교육을 포괄하거나 통합하는 개념이다. 즉 평생교육은 교육을 하나의 전제로서 관조한다.④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까지를 포함하는 동시에 조직적인 학습과 비조직적인 학습을 포함한다.⑤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가정이 그 1차적인 대상이다. 평생교육에서는 가장 민감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가정이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학습은 한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되어지는 것이다.⑥ 평생교육 체제에 있어서는 그 지역사회에서 태어난 아동을 중심으로 그 아동이 처음으로 지역사회와 접촉할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⑦ 학교와 대학, 또는 훈련기관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각각 전체 속의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써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 이들 기관들은 일정한 사람들의 교육을 독점하는 특례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의 다른 교육기관으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할 수가 없다.⑧ 평생교육은 계속성과 아울러 수직관계의 종적 측면에서 교육의 통합을 추구한다.⑨ 평생교육은 그 발달단계에 있어 수평적, 심층적 측면의 교육의 통합을 추구한다. ⑩ 평생교육은 선택된 자들을 위한 교육형태와는 달리 그 성격이 보편적이고 민주적이다. 평생교육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의 민주화를 추구한다.⑪ 평생교육은 학습시간, 학습내용, 학습방법 및 자료등에 있어서 융통성과 다양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⑫ 평생교육은 새로운 학습자료나 학습매체가 개발되었을 때 즉시 그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역동적인 교육 방법이다.⑬ 평생교육

은 그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너무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추구하게 된다.⑭ 평생교육은 교양교육과 중간 직업교육이라는 두 개의 광범위적 구성요수를 가지고 있다. 이 구 개의 구성요수는 성격상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가 있거나 상호작용을 가능 것이다.⑮ 개인의 사회적 적응기능이나 혁신기능 등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⑯ 평생교육은 기존 교육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교정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⑰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⑱ 평생교육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기회와 동기, 그리고 욕의 가능성이다.⑲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기관의 조직원리이다.⑳ 실천적 단계에 있어서의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의 전체적 틀을 준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상과 같이 평생교육의 개념은 주로 교육의 모든 부분 또는 영역간의 통합성과 계속성, 전체성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는, 유네스코에서는 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 학교교육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한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제반 교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서 교육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려는 총체적 노력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개념 규정에는 평생교육 이념의 교육부문간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와 효율지향서, 교육산출력 제고 등과 같은 속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평생교육의 이념 창출 배경으로서는 사회교육부문이나 학교의 교육부문, 비형식적 교육부문 등 학교교육부문에 대한 상대적 낙후성과 비효율적인 방법에 대하여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 논거를 두고 있다 여기에 공교육의 비판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그 대안으로 부각된다.

평생교육을 총체적인 ‘유 (類) 의 개념(Generic Concept)’ 으로 보면서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이라는 하위의 ‘종 (種) 의 개념(Specific Concept)’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평생교육을 규정하고 관련 개념간의 위계화를 통한 최상위 개념으로서의 평생교육을 분명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의 논의들에 대하여 평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종합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평생교육은 교육개념의 광역성과 통합성, 교육시기의 계속성과 향상성, 교육대상의 평등성과 전체성, 교육접근 방식의 다양성과 상대성, 그리고 교육체제의 개방성과 탈 정형성을 개념의 특성으로 하는 교육이념으로서 이는 기존의 교육이념과 체제에 대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교육양태상으로는 형식, 비형식, 무형식교육, 그리고 교육영역상으로

는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 이념이며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수행과 교육적 선택의 자유를 통한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념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개념은 교육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인 통합으로 바뀌어 된다. 이때 교육의 수직적 통합이란 개요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항구적이고도 계속적인 학습을 의미하며, 교육의 수평적 통합이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연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평생교육의 특성

평생교육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기본 성격과 그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나 여기서는 아홉 가지의 기본적인 특성을 소개 정리를 다음과 같다(권이중, 이상오, 2001).

첫째, 탈정형성을 특성이 있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본질적으로 탈정형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평생교육은 교육의 시기에서부터 교육의 장소, 교육대상, 교육담당자, 교육체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수학습자료 및 교재, 교육평가방식 등에 걸쳐 획일적이며 경직된, 그리고 폐쇄적이며 정형적인 교육적 요소가 학교교육에 비해 극소화된다. 반면 개방적이고 다원적이며 자율적인 탈정형적 교육의 요소가 강한 특징을 지닌다.

둘째, 자발성을 특성이 있다. 평생교육은 타인의 강요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필요와 교육적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을 선택하며 자율적 의지로 교육참여를 결정하게 된다. 미리 정해진 교육과정의 틀에 의해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전 과정 즉 계획,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학습자가 함께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행하게 되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 상호학습성을 특성이 있다. 학교교육이 비교적 일방적, 지시·명령적 학습과정이라면 평생교육은 원칙적으로 상호학습(Co-Learning), 즉 모두가 가르치고, 모두가 배우는 학습특성을 지닌다. 학습자 상호간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 지적·인격적 교류와 피드백을 통한 학습이 중요시되는 상호학습의 특성을 지닌다.

넷째, 현실성과 실제지향성을 특성이 있다. 학교교육이 준비교육이고 미래지향

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과 달리 평생교육은 현실 지향적이고 실용적이며 즉시적인 적용 가치를 지니는 교육이 중시되는 특성을 지닌다. 대부분의 평생교육 참가자들은 현재 본인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IMF이후에 많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하여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현실성을 잘 나타내는 평생교육적 상황이다.

다섯째, 다양성과 이질성을 특성이 있다. 평생교육은 학교에서의 학생대상 교육과는 달리 교육대상, 담당자의 이질성과 교육, 목표, 내용, 방법, 시기, 시간, 장소 등의 매우 다양하고 비획일적이며 유동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뷔페식 교육과정(buffet curriculum) 또는 카페타리아식 교육과정(cafeteria style curriculum)의 특징을 지닌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학교교육대상 또한 점점 이질화되어 가고 있다.

여섯째, 과정 중심성을 특성이 있다. 평생교육에서는 모든 계획·실행·평가 전 과정에서 모든 학습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교육에서 참여와 공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자 원하는지에 관한 교육적 요구 조사가 실행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자는 마치 빈 컵이나 백지와 같은 객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축적된 지식과 경험위에 스스로 필요에 따라 삶을 추구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학습자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교수자와 학습자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이며 권위에 기초한 주종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동한 관계하에 함께 참여하고 공존하는 특성을 지닌다.

일곱째, 참여와 공존성을 특성이 있다. 평생교육에서는 모든 계획·실행·평가 전과정에서는 모든 학습구성원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교육에서 참여와 공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자 원하는지에 관한 교육적 요구 조사가 실행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자는 마치 빈 컵이나 백지와 같은 객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축적된 지식과 경험위에 스스로 필요에 따라 삶을 추구해나가는 주체로서의 학습자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교수자와 학습자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이며 권위에 기초한 주종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동한 관계하에 함께 참여하고 공존하는 특성을 지닌다.

여덟째, 경험 중심성을 특성이 있다. 평생교육의 기획·실행·평가 모든 분야에서는 학습경험을 통한 지식의 축적을 중요시 한다. 평생교육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삶의 경험이 최대의 학습자원으로 중시되고 그 활용이 강조된다. 평생교육은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 간의 각 개인 학습자의 경험자원을 최대한 활

용하는 경험중심적 교육·목적·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지닌다.

아홉째, 즐거운 학습을 특성을 있다. 모든 삶이 그러 하지만 특히 평생교육은 배움의 즐거움이 뒤따라야 한다. 평생교육은 자발적이고 비의무적인 참여에 의한 자율적 학습이므로 무엇보다도 학습자체가 즐거운 학습이 되어야 하며 학습자에게 학습을 통한 내적 만족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적정의 레크레이션적 요소가 가미되며 나이 많은 학습자들이 많으므로 그들의 계속 교육의 내적 그리고 생활의 만족감과 지적 욕구 충족을 통한 회열이 중시된다.

평생교육은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종적·횡적인 제교육을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발달단계에 알맞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원리이다. 또한 사회를 교육적 환경으로 만들고 호기심과 학습의욕을 고취 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과 일반대중들의 평등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은 형식, 준형식, 비형식을 총망라하여 교육의 형태, 내용, 방법 등에서 융통성 다양성이 있어 학습자의 학습기회의 선택과 학습의 다양한 전개가 준비 되어 있어 가능하면 학습자의 기호에 부합되도록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개인 및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나선형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성민, 2002).

3) 평생교육의 목표

평생교육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랑그랑(P. Lengrand)의 견해에서 찾아 보기로 한다. 랑그랑(P. Lengrand)은 유네스코 간행의 원간지에서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평생교육은 연령의 제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유이란 생활 그 자체인 것이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안정에서 구하지만, 자진해서 도전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나 고난에 부딪혀 이겨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생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자기 주위의 사회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생활의 흐름 가운데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의 생활화과 평생화

의 의의를 똑같습니다.

둘째, 평생교육은 학교가 독점하고 있는 교육체제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다. 평생에는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학업과 결별을 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의 졸업은 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의 졸업은 겨우 교육의 한 단계의 종료를 나타낼 뿐이다. 참된 교육은 평생교육이라는 조화된 체계가 수립되고,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교육에 시작하고 학습을 계속하려는 동기를 갖게 될 때 비로소 성공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학교교육은 음악에 비유하면 서곡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코스를 제공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성인이 자기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의지의 소통의 가능한 수단을 익히는데 두는 것이다. 이때 언어 사용에 관한 것, 집중력과 관찰능력의 발달,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한다. 학교는 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곳이며,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셋째, 탈락자가 없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어떤 연령에서 교육이 종료되고 시험이나 졸업증서, 그밖에 선택형식에 의한 '통과의식'으로 구획되는 교육제도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거나 특별취급을 받는다. 이와 같이 사회 한 곳에는 행운의 사람이 있고, 다른 곳에 불운한 사람이 있으며 혹은 학습에 무관심한 사람의 집단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평생이 그 어느 부류인가에 상표가 붙여지게 된다.

그러나 만일 적절한 평생교육 체제가 확립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교육의 과정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면 한때의 과정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게 되다면 한때의 실패가 그 후에도 계속되는 절대적인 실패가 되지 않는다. 성공이라는 것도 실패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것이어서 한때의 성공은 그때의 성공일 뿐 다른 기회에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성공은 때로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검사하고 새로운 출발의 동기요인으로 활용한다. 평생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부나 지위에 두지 않고 가치로운 삶의 성취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낙제라든가 탈락과 같은 불운이 있을리 없다.

넷째는 전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독자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인간성은 어느 세계에서나 동일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은 다른 것으로는 대신 할 수 없는 독특한 개성과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무명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출생시킨 문명과 시대와 환경에 대하여 무엇인가 공헌하면서 자기만의 유일한 발자취를 남기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사람이 공헌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분은 반영할 뿐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자의 풍부하고 여러가지 요소를 전부 표현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학교교육은 인간의 개성이라든가 독자적인 생활태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경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가령 동일한 지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특성으로 발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일정한 연령에서 시작하여 일정한 연령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20세에 그의 능력이 완전히 개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30세 혹은 그이상의 되어서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이나 졸업증서라는 것이 이러한 비인간화의 과정을 결정하고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인간은 일생에 걸쳐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살고 있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남김없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람에게 적용된다. 말하자면 인간의 일생은 미지의 인간성을 개척해 가는 일대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학교에서 부과되는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일생 동안 연속적인 각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독자성을 표현하게 된다. 평생교육의 체계가 실현되는 사회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광범위한 학습기회를 제공 할 수 있고 여러가지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4) 평생교육의 필요성

1978년 한국교육개발원은 문교부 제출 보고서에 앞으로의 교육정책방향을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 노력의 결과로 헌법에 평생교육의 조항을 명문화하여 평생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게 되었고, 1982년에는 사회교육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발전적 전략과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평생교육 발전세미나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사회변동의 효과적인 대처와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역량의 증대, ② 팽창하는 지식의 습득과 새로운 사회가치의 창조적 비판적 수용, ③ 전문화, 특수화, 조직화의 현대사회체제에서 개인의 기능적 적응 ④ 개인의 잠재력 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생 동안 끊임없는 최대 개발, ⑤ 발달단계의 수행 역할 습득과 새로운 개인적 요구의 만족, ⑥ 형식교육의 보충 보강과 기회를 놓친 사람의 기초교육의 기회제공 등이 있다.

이에 “지식기반사회”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준비와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1999년 교육부는 교육체제에 개편으로 사람중심의 사회, 교육중심의 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통해 지식과 창의력을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목표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평생교육체제를 완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1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자원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수립하여 인적자원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를 완성하였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을 “사람과 지식”을 국가발전의 개발과 활용에 전략적 노력을 신경많이 쓰고 있다.

평생교육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자체의 변혁의 필요에서 대두된 것으로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적 도전과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랑그랑(P. Lengrand)은 평생교육의 필요를 자극하는 현대의 도전으로 ① 급속한 사회 변화와 인구의 증대, ②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발달, ③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인 도전, ④ 매스컴의 발달과 정보의 급증, ⑤ 경제적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 ⑥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균형 상실, ⑦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위기 등을 들고 있다.

둘째, 학교교육의 기능상실을 들 수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전 세계교육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평생교육의 대두는 1960년대 이후에 고조되기 시작한

전통적 학교교육에 대한 활발한 비판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지식 위주로 일관되어 끊임없이 급변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는 무론 개인적, 사회적 요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교육은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셋째, 사회교육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가족교육, 사회교육, 직업교육을 개편·강화하고,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역량을 큰 노력이다.

21세기는 세계화라는 변화 속에서 본격적인 경제전쟁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지식기반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라는 또 하나의 시대적 현상은 시대의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지식기반사회는 첨단컴퓨터와 정보 관련기술, 통신과 네트워크기술 등 인간의 지적활동으로 생산한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는 지식집약적인 고부가 가치의 경제활동을 요구하며, 이러한 급변하는 생산세계에 대응하여 계속적 고용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신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공유하려면, 이를 활용하기 위한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대학평생교육의 개념

1) 대학평생교육의 용어 변천

대학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00여년 전에 영국의 대학교 지방에 가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장강의를 하면서부터이다. 대학교평생교육은 초기부터 성인교육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기에 일반적으로 대학교성인교육이라고 불리워 왔다. 그러나 평생교육 이념의 확산과 함께 대학교의 역할이 전통적 개념의 교육활동, 즉 20세 전후의 청년층 학생을 위한 정규 학위과정 운영에 제한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하여 광범위한 교육적 활동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학교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대

학교평생교육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아직은 낯설은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성인교육 혹은 대학교 개방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대학교평생교육의 개념은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많은 비슷한 개념들이 존재한다. 그 비슷한 개념들을 살펴 봄으로써 대학교평생교육의 개념을 명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학확장과 대학개방(University Extension)

「대학확장」(大學擴張)은 영국의 캠브릿지 대학이 노동자와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에 강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캠브릿지대학교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지식을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강좌를 사회로 가지고 나아가 교육하였다. 따라서 이 용어의 개념은 대학이 캠퍼스 밖으로 나가 성인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는 「대학개방」이란 용어는 상술한 대학확장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었으나, 평생교육시대가 전개되면서 대학개방화가 요구되어 대학개방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학개방이란 대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축적해 온 심오한 학문적 지식과 인적·물적 자원을 사회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여기에서 개방은 「대학교육의 대중에의 확장」(extension of the university teaching)과 「학문적 성취의 공유」(social laboratory)의 두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전자는 캠브릿지대학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이 교육대상을 정규학생에서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하고 대학내에 한정시켜왔던 교육기능을 대학밖으로 확장하는 것이며, 후자는 미국 주립대학의 초기 이념이었던 주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대학화를 부르짖던 초기 주립대학의 자세에서 시작되었다.

(2) 대학성인교육·대학사회교육·계속고등교육(University Adult & Continin Education)

「대학성인교육」이란 서구 대학들이 노동자, 여성 등과 같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대학확장 초기부터 같이 사용하던 용어로 1960년대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던 용어이다. 성인교육 가운데 대학이라는 장소에서

전개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대학사회교육」을 사회교육을 주로 사용하여 왔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며, 특히 1988년 11월에 개최던 한국요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세미나에서 대학에서의 사회교육 활동을 위한 협의체에 대하여 구상한 바가 있고, 다음 해에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를 결성함으로써 대학사회교육이라는 용어가 공식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사회교육을 대학이 수행하는 모든 사회교육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Petersen 과 같은 이들은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낮은 수준의 교육활동과 대비하여 대학 수준의 교육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학성인교육」(University Adult Education)이라고 규정하려는 견해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평생교육 이념과의 관련과 그에 제공되는 직업재교육적 성격에서 계속교육과 연결된 개념으로 최근에는 「계속고등교육」(continuing higher educ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요즘 서구 성인교육분야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현상으로 자유교양교육 중심의 전통적 성인교육(liberal adult education)과 직업교육 중심의 교육(further adult education)의 개념이 종합하여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유교양교육과 직업교육 간의 간격을 제거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의 「전국성인계속교육협회」(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 NIACE)나 「미국성인계속교육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 AAACE)라는 기관 명칭도 원래의 성인교육에 계속교육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성인교육 개념이 주로 자유교양교육 중심이었던 데에 비하여 「성인계속교육」은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이 성인계속교육 분야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학성인교육 개념과 연관시켜서 음미할만한 용어이다.

(3) 성인고등교육(Higher adult education)

「성인고등교육」은 대학개혁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개념은 아직도 분명하게 서 있지 않다. 미국에서 성인고등교육(Higher adult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1950년부터 사용되기 비롯하였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일반화 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일본도 「성인고등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개념은 성인교육측면에서는 문해 및 계몽교육적 성격을 취하던 「기초문해

성인교육」(basic literacy adult education)과 대비되는 개념이면서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고등교육 수준의 성인교육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견해를 종합해 보면,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고등교육기관과 제휴하여 실시되고 있는 성인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4) 대학평생교육(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계속 확산되고 있는 평생교육 이념과 고도화 되고 있는 시민의 학습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대학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교양 중심의 교육, 직업교육 등 다 포함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관련 비슷한 개념들과는 다르게 대상에 있어서나 교육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학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시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락돈.이현청.김도수.윤미란) 본 연구자도 이러한 입장에서 대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사회교육 활동을 대학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고자 한다.

성락돈에 따르면, 이 개념 속에는 대학이 기존의 공식적인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비학위, 비학점과정의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준면에서는 종래의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여러자기 전문적 계속교육이나 중등후 교육을 수용하며 때에 따라서는 기초교육이나 중등수준의 교육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평생교육 활동의 대상과 범위는 거의 무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성락돈, 『교육학연구』 1990)

「대학평생교육」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개념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평생교육 개념이 모든 교육의 상위 개념이라는 방식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과 사회교육, 혹은 더욱 다양한 형태의 대학개방을 의미하는 대학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의미하고 있다.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이 과연 연계하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University의 선별성(selectivity)과 평생교육의 개방성(openess)이 어느 접점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의 보수성이 평생학습을 촉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지금은 대학이 안팎에서 개혁을 요구

받고 있으며, 교육개혁에서 대학평생교육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은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2) 확장(extension)의 의미

역사적으로 대학평생교육의 기원은 대학확장(University extension)에 있다. 요즘까지도 대학평생교육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이 대학확장을 항상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확장」이라는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Petersen과 Petersen은 대학확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는 가장 명료한 것으로 시공간의 개념(in time and space)이다. 이는 우선 19세기 중엽 옥스퍼드대학의 개혁과정에서 대학이사회에 제출된 Sewell경의 대학확장 아이디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중을 대학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거꾸로 대학을 대중들이 있는 곳에 가지고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고 주장하였다. 또한 1906년 위스컨신대학의 Van Hise 총장이 확장보를 조직하면서 “대학캠퍼스를 주의 경계에까지 확장한다.”고 선언하고 위스컨신주의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대학이 봉사한다는 이념을 주장하였던 역사적 사실에서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다. 이 확장의 개념이 미국 대학성인교육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스컨신 아이디어였다.

시·공간적 확장 개념은 대학교육과정이나 대학교육의 수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천천히 특정 대상을 위하여 특별한 과정과 방법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교육수준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두 번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적 확장(functional extension)이다. 전자가 정규 수준의 대학교육을 일반 사회인에게 개방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대학이 지닌 교육자원을 외부인의 요구에 적합하게 재편성해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는 대학 전통적 영역에서의 확장의 아니라 대중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교육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즉, 수준절하의 확장(substandard extension)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최근 대학들이 채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대학확장교육이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목적이 너무도 다양하고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확장」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대학 본래의 기능이었던 연구

와 학생교육이 사회복지, 지역사회봉사 등과 같은 부문에 의하여 대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기능의 변화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위스컨신대학의 개방 형태를 따르던 주립대학들은 모든 주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결국은 교육 스탠다드를 희생해야 했다. 반면에 시카고대학의 형태를 따르는 경향이 있던 사립대학들은 학문적·문화적 과제와 최고의 대학 수준의 성인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

학위 내지는 자격 취득의 방법으로 대학성인교육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개념이 유지되어야 하겠지만, 사회교육이 학교교육을 보완 기능으로부터 마침내는 스스로의 고유 기능으로 그 역할을 변화시켰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대학평생교육도 또한 고학력화 사회의 진전에 부응하여 앞으로 「기능적 확장」에의 기대가 높아지리라고 예상된다.

3. 대학평생교육의 필요성

오늘날 대학을 'Multiversity'로 표현하는 것과 같이, 현대사회는 대학의 다기능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70년 케냐나이로비에서 열렸던 제 19차 UNESCO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학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제 고등교육체제는 더 이상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연령집단의 요구만을 만족시키는데 그 기능을 제한할 수 없다. 대학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전 지역사회에로 까지 그 사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은 교육의 대상을 좁은 제약 속에서 선발할 수 없게 되었고, 특정 학위나 정규 교육과정에 국한할 수 없는 다양한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회문제와 전체 성인의 교육적 요구에 무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은 새로운 비전통적인 교육요구와 다기능적 역할기대에 직면하여 교육형태나 구조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대학인구 및 교육요구의 증가, 대학재 성인 학습자의 증가, 대학의 자원 활용 및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1) 대학인구 및 교육요구의 증가

오늘날 대학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교육적 요구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국민 경제수준의 향상, 산업계의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 고학력への 열망, 사회적인 상승이동 수단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도구주의적 인식, 교육복지와 민주적 발전에 따른 교육기회 평등 원리의 보편화 등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등교육의 양적인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교육인구의 확대 및 교육요구의 증대는 고등교육관의 지속적인 증설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나 대학 기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학마다 새로운 고등교육의 형태로서 대학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대학내 성인 학습자의 증가

오늘날 다원적 변화 중에서 또 다른 일면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층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미 학습이 끝났거나 중단되었던 성인들의 교육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교육요구 중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에서 고등전문인력을 다수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직업이 보다 전문화·다원화되고 빈번한 직업이동이 초래됨에 따라 직업재교육 또는 준비교육이 필요하게 되었고, 필연적으로 보다 많은 직업을 가진 성인들이 대학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직업에 관련된 요인 외에도 성인들은 자아만족·자아성찰 등을 추구하기 위한 교양이나 여가·취미·오락 등이 비학위과정을 통해 제공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3) 대학의 자원활용 및 가능성

대학의 교수요원 및 시설확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인들의 대학교육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있는 대학

의 인적·물적 자원 및 교육 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중요한 방안의 하나가 대학 평생교육의 실시이다. 대학개방을 통해 대학의 좋은 시설과 우수한 지도력, 그리고 사회의 모두 영역에 관계되는 전문적인 인적자원 등이 성인교육에 투입될 때, 그 추진력과 효과는 다른 어느 교육기관보다 우수할 것이다.

이규환도 대학은 일반학교보다 지역사회와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지역사회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은 학교보다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사회일선에 연결되어 있고, 대학은 광대한 캠퍼스에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여러 학문 또는 교육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를 많이 유치하고 있어 그들이 지역사회의 성인들을 지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은 성인들은 위한 대학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모든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교육의 연구와 지도를 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물적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대학평생교육을 통해 기존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육인구와 요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특히 성인인구층의 비대화와 함께 대학에서 성인학습자의 요구가 점차 강화하면서, 대학이 가진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설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하며 대학 평생교육의 실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전개되는 대학 평생교육을 통해 대학은 그 기능을 보다 확대하여 현대가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제2절 대학교평생교육의 유형

1. 학습자의 참여 유형

대학평생교육의 유형은 학습자의 참여 유형, 즉 교수-학습 활동의 유형에 따라 정시제, 계절제, 통신강좌를 통한 원격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과정의 성격에 따라 학위과정(credit course)과 비학위과정(non-credit cours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1) 정시제

대학에서 전일제(full-time) 학습이 직장이나 가사를 위한 개인의 책임에 관하여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는데 비하여 정시제(part-time)는 학위 수준 학습을 하면서 직장이나 가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학습이 끝난 후에도 실직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으며, 생산적인 휴가를 보낼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직장을 가진 성인 학습자들이 일과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시제 학습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즉, 야간강좌, 정시제 주간강좌, 주말강좌, 계절강좌, 원격교육을 이용한 방송통신 강좌 등이다.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정시제 학습조직에는 다음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 정시제 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로 원격교육기관인 영국의 Open University와 한국의 방송통신대학 등이 대표적 예이다.

둘째, 정시제 과정과 전일제 과정을 동시에 설치하지만 분리 운영하는 경우이다. 정규 대학과정과 야간강좌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일본의 대학에 통신강좌가 부설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셋째, 정시제와 전일제 과정 규정 사이에 구분이 없는 경우이다. 스웨덴은 전일제와 정시제의 구별이 원칙적으로 폐지 통합되었다. 동일한 과정이 전일제 학위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혹은 정시제 학위 프로그램으로 계속된다. 최근 한국도 「시간제 등록 학생제」라고하여 정시제 학위과정이 도입되어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 원격수업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 혹은 원격수업은 대학평생교육에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원격교육은 문자 그대로 교육이나 학습활동이 두 주체인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교육활동이 기획되고 실천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 교육이다.

시간과 거리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편이나 통신, TV, 라디오를 통하여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성인 학습자들에게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원격수업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원격교육이라는 용어가 함축하는 바는 간단한 통신교육 방법을 통한 수업론적 또는 교수기술론적 특징을 갖는다는 제한적 의미만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보다 이념적이며 철학적인 교육적 의미상의 변화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적 원격교육의 개념은 교육기관, 특히 고등교육기관이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신축성을 발전시켜 현대의 급증하는 평생교육적 요구에 대응하며 창조적으로 교육을 공급하여 모든 사회의 복지화를 위하여 원대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주의적 교육관을 전제로하여 발전되어 온 것이라 하겠다.

원격교육제도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① 세계 교육개혁의 방향인 평생교육의 제창 ② 학교밖에 인구의 교육요구 증대 ③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달과 그 비용 효율성의 이점 등을 들 수 있다. 원격교육의 모순을 시정하려는 평생교육의 개혁방향은 바로 원격교육의 대두를 필연적으로 가능케 한 교육사적인 조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원격교육은 민인에게 교육기회가 개방되어 있으며, 직업인으로서의 실제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며, 학교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학습할 수 있으며,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질을 함양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 구현의 대표적인 혁신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원격교육의 조직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기존의 정규 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원격교육부」라고 불리는 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된 기관으로 새로 설립된 「원격교육대학」을 불린다. 전자는 원격수업을 일반 교실수업에 대한 부가적 활동으로 여기서 현존하는 고등교육 기관내에 하나의 부서로 부설되는 형태인데 지방분권화된 체제에서 주로 채택된다. 북부 유럽국가들과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의 일부 사립대학들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경우 시간을 절약하거나 수업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미국에서 통신과정은 교실 수업 수업료의 반액 정도로 운영됨), 혹은 개인의 학습 스타일이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동일한 과목을 교실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형태는 1969년 설립되어 1971년 개강한 영국의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이 그 전형적인 모델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 구미 많은 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물론 제 3세계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원격고등교육기

관을 설립하였다. 프랑스의 원격교육(Enseignement a Distance) 관계법 제정(1971), 태국의 람캥행대학(1971), 한국방송통신대학(1972), 오스트레일아의 라디오TV대학(1972), 이스라엘의Everyman'sUniversity(1973), 서독의 Fernuniversitat(1974), 미국의UniversityofMid-America(1974), 캐나다의 Athabasca 대학(1975), 베네주엘라의 아비에르타대학(1977), 중국의 방송통신대학(1979), 스리랑카의 개방대학(1980), 일본의 방송대학(1985), 대만의 공중대학(1986), 미국의 토신교육대학 등 수많은 원격교육기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독립 원격고등교육기관의 주된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하는 대학을 이용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 특히 직장과 가사종사자들에게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둘째, 전통적인 연령집단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대시킨다. 셋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갱신하거나 확대시키거나 하는 전문 직업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중에게 비학위과정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원격교육대학은 주부가 직장인과 같은 일반 성인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교육체제이기 때문에 운영상 나라마다 특별한 특성을 갖는다. 우선 어떤 나라에서는 입학의 연령제한(minimum age requirment)을 두어 일정 연령 이하인 경우에는 입학 자격을 주지 않아 성인들에게 기회를 확대한다. 반면 대부분의 나라들도 개방입학정책(open access policy)을 채택하여 전통 대학과는 달리 학력을 입학 조건에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Open University, 일본의 방송대학 등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여 우선 입학, 우선 수학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과정으로 예비과정 혹은 기초과정을 두어 기초 학력을 보충하여 주는 경우도 있다.

원격수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를 시작한 테크놀로지와 통신미디어의 활용을 통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며, 특히 대학평생교육 부문에서 학습자 참여에 큰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요즘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원격교육은 큰 발전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현청은 이러한 원격교육 아이디어를 갖춘 미래의 대학을 「매체형대학」(Televersity)라 명명하고 매체형대학으로의 변모를 21세기 대학평생교육의 기본 방향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이현청) 현재 정규 커리큘럼 중심의 대학교육 체제는 비정규프로그램의 확대방안으로 변화되면서 학습대상, 교수방법, 커리큘럼 운영체제, 입학과 졸업 등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외에도 이동학습체제(mobile learning system), off-campus

program, 융합적 커리큘럼(blended curriculum), 학점중심교육과정(network program), 텔레학습(telelearning) 등의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2. 대학평생교육의 유형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전개를 위하여 대학이 일반 성인과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은 대학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방의 유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유형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대학 정규강의의 공개

정규 학생들의 정공 혹은 교양 강의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법이다. 공식적인 인가를 받아서 일반 성인에게 대학의 시설을 개방하거나 정규의 강의를 공개하는 개방사업이다. 대학의 정식으로 개방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장 용이하게 시작할 수 있으며 일반 학생들과 사회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학습함으로써 지역사회 시민들과 대학의 구성원들간의 유대감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규 학생들이 이해가 부족할 경우는 심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일반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정시제 성인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으며, 강의의 수준의 떨어진다라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

또는, 일반인들의 입학에 있어서 법적 · 제도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입학 시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학 입학시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학입학제도 및 학점인정제도를 개선하여 대학의 학점 인정 과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7학년부터 13개 대학에서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시제 학생 모집이 바로 이러한 입학제도 개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대학 정규수업과는 별도의 공개강좌

일반 성인들을 위하여 대학의 정규수업과는 별도로 공개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평생교육 형태이다. 오늘날에도 대학공개강좌 혹은 개방강좌 등의 명칭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초기 단계의 개방사업은 대학의 공식적인 관여가 없으며 형식적인 절차에 구애받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사업을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직성, 연속성, 체계성 등이 부족한 약점도 있다.

공개강좌는 대학 교원이 대학 외부의 사회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요즘에 대학 교원이 기업체나 시민 단체, 기관의 요청으로 전문분야의 지식을 학습 대상자의 수준에 맞추어 강연회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교양 위주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3) 계속교육부의 운영

대학의 공식적 기관으로 「계속교육부」(Department of Continuing Education), 혹은 공개강좌부, 성인계속교육부, 교외교육부, 야간부, 통신교육부, 방송대학부, 현직교육부 등을 다른 학부와 동등한 지위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 부국을 설치하여 독자적인 커리큘럼의 편성, 전임강사의 선임, 학점 인정 등에 대하여 대학내외의 인원,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을 행한다.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학평생교육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내용이나 학습방법에 있어서 사회 각층의 학습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습장소도 대학 캠퍼스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나 교육활동이 가능한 곳에서 대학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각 대학이 계속교육부를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한층 더 능률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립대학이 그 역할을 선도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간학부의 개편도 고려될 수 있으며 학위 받을 위한 대학평생교육체제 전체에 대한 개편도 구상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이 대학평생교육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교외교육부

(Extra-mural Department)나 미국의 계속교육부(Department of Continuing Education)등과 같이 선진제국에서의 대학평생교육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재 「사회교육원」 혹은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 기구의 체제화와 프로그램의 질과 관련하여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4) 성인을 위한 독립대학

이상의 유형들은 기존의 대학을 활용하여 일반 사회인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한 성인들의 교육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성인만을 위한 독립된 고등교육기관인 새로운 유형의 성인대학이 신설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학평생교육 체제는 기존의 고등교육의 혁신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기존의 대학체제를 가지고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지식·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없고 고도산업사회에서의 전문화된 기술인력을 배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전문기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개방체제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개방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다가 현재 「산업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개칭된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산업체에 종사하면서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노동자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기존의 대학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방형 고등교육기관은 산업체와의 연계를 핵심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산학협동과정의 연계체제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산업체의 요구와 협력을 받는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성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모델로서 구상되었던 개방대학이 현대 특성대학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개방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기업체의 「사내대학」이나 「기술대학」 등도 기존의 대학교육체제에 대한 개혁의 일환이며 성인을 위한 혁신형의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의 발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차감부는 성인만을 위한 독립대학인 「성인대학」을 모형화 하였다.

「성인대학」은 글자 그대로 성인을 위한 대학이며 직업이나 가사 등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생교육적 차원의 고등교육기회이어야 할 것이다. 즉 성인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센터가 되어야 한다.

그는 자신이 모형화한 「성인대학」을 평가하면서 기존의 개방형 체제의 고등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개방대학」과는 다음과 같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기존의 개방형 대학은 입학조건에서 성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지만, 「성인대학」은 성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성인교육 대학이어야 한다. 둘째는 기존의 개방형대학은 입학정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성인대학」은 입학을 원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자유 입학 대학이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개방형 대학은 입학시기가 제한되어 있으나 「성인대학」은 이러한 제약이 없이 수시입학 대학이어야 한다. 넷째, 기존의 개방형 대학은 설치학과가 특정분야에 제한되어 있으나, 「성인대학」은 학위취득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동시에 설치한 명실공히 성인교육을 위한 종합대학이어야 한다. 다섯째, 기존의 개방형대학은 교육과정이 계열화되어 있어 단기 학습이 용이하지 않으나, 「성인대학」은 뷔페식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필요한 내용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이러한 성인대학의 특성은 기존의 두 기관이 평생교육 체제하에서 열린 고등교육체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3절 선행연구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들이 계속되었다. 영국의 로빈스보고서(1963), 일본 사회교육학회의 학회지(1968), UNESCO의 포오르보고서(Faure et al., 1972), 미국의 카네기고등교육위원회보고서(The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1973), 켈로그재단보고서(1974), OECD의 보고서 (1987),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의 보고서(1992)등이 대표적연구결과이다.(Faure,E.,etal.,1972,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1973, Vermilye, D. W.(ed),1974,Williams, G.,1987,日本社會教育學會,1968,Apps,J.W,1981,H. B.et.al.,1993,정우현,김우수,이무근,박진규,1992,노종회, 최돈민, 정기수,1996).

한국과 중국의 국내에서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대학평생교육은 고등교육 연구에서 각광받은 주제가 되었다. 한국에서 최근 20년간 대학평생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를 보면 주로 서방국가들이나 일본 등 나라의 대학개방의 역사와 전개과정, 동향 등에 관한 연구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김두연, 1995, 최순복, 2000, 이규환, 1988, 황종건, 1994, 박노열, 1989, 김영주 역, 2002, 김영주 역, 2002, 서지현, 2005) 또한 실제 대학평생교육의 발전방안과 정책 제언을 한 연구사례도 있다. (성낙돈, 1988, 박노열, 1993, 이현청, 1996, 정구진, 2002, , 한방교, 1985, 이경배, 1996, 윤미란, 1998, 최욱이, 2000, 박지연, 2004) 중국의 경우에는 대학평생(성인)교육에 관한 연구도 일부 발견이거나(黃建, 2000, 朴福仙, 1994, 王霖, 2005, 吳遵民, 2003) 대학평생교육의 이념은 곡해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평생교육 선진 국가들과 비교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역사적으로 중국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 대학평생교육은 현재 선진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역사 문화도 비슷하다. 그런데 양국 대학평생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한·중 대학교의 평생교육체제에 관한 비교연구는 양국의 대학교평생교육과 나아가 평생교육전반에 걸쳐 더욱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제4절 분석틀의 설정

1. 이념 측면

개념사용 측면은 한국은 90년대 말에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평생교육개념을 광범히 사용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아직 성인교육의 단계의 체류하고 있다. 한국에서 쓰고 있는 개념인 ‘대학평생교육’의 상위 개념은 평생교육이고 중국에서 쓰고 있는 개념인 ‘대학성인교육’의 상위개념은 성인교육이다.

교육 기본 이념 측면은 한국의 교육지도 사상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이고 홍익인간,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 등 개념을 강조하고 국가발전, 일류공영으로 지향한다. 중국의 교육 목적은 교육은 마르크스레니주의와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의 지도 밑에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하고 생산노동과 결합해야 하고 모든 수교육자를 지덕체 전면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사업 건설자 및 후계자를 된다.

평생교육의 이념 측면은 한국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고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중국에서는 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실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업 규정의 요구에 달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현직종사자 중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나날이 새로워진 과학기술을 적응하기 위해서 대졸자를 대상으로 계속교육을 실시한다.

2. 법제도 측면

한국은 평생교육법 적용하고있다. 중국에서는 성인교육개혁과발전에관한결정(평생교육법 제정 중)을 적용된다.

평생교육관한 관련 법률은 한국에 헌법,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고등교육법, 독학에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산업교육진흥,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등이 있다. 중국에서는 헌법, 고등교육법, 민판교육법, 직업교육법, 학위조례, 고등교육 독학시험조례, 성인대학설치의장행규정 등이 있다.

3. 학사운영 측면

대학평생교육기관은 한국에서 독립 성인교육대학은 주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한 대학들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독립 평생(성인)교육기관은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만 주로 직공대학, 농민대학, 관리간부대학, 교육대학, 통신대학, TV대학 등 6가지 유형을 나뉜다.

대학교평생교육 과정형태는 한국은 인성, 교양과정 등 비학위 과정을 위주로 학위과정도 운영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학위과정을 위주로 비학위과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직업에 관한 과정 많이 차지고 있다.

4. 행·재정적 지원 측면

한국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른 부처보다 위상이 높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국가 부총리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 중국의 교육부 안에는 평생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조차 아직 없어서 각각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사, 고등교육사 등 두 개 부서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한국은 국가 재정지원 체제 완벽하고 국가 각 부처 공동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한다. 중국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체제는 미흡하고 평생교육 수강료는 학습자를 자비로 하는데 몇몇 기업에서 부분적으로 지불한 경우도 있다.

제3장 한국 대학평생교육체제

제1절 교육이념

교육이념이란 교육의 행위 전체를 지휘하는 근본 원리로서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준의 활동이나 원리에 대한 교육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치체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이념은 8.15광복 이후 싹트기 시작했다. 한국의 교육은 광복이후 줄곧 자주와 민주의 이념을 내세우게 되었다. 미군정하에서 식민지교육을 탈피하고 새로운 교육의 재건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선 교육위원회와 조선 교육심의회역의 역할 과소평가할 수 없다.

1946년 3월 조선 교육심의회에서 채택된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의 건국이상에 기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이극복이념으로’ 함을 명시하였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1949년 말에 제정된<교육법>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한국 교육이념을 최초로 성문화한 것이다.

제3공화국정부는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의 중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족주의, 국가주의 교육이념을 보다 전면에 부각시켰다. 국민교육헌장은 민국논리의 강조, 전통과 개혁의 조화, 창의, 개혁 등 발전 지향적 가치관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이 다소 퇴색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으며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정신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80년 10월 25일 제8차 개헌을 통하여 제5공화국 헌법은 제 29조 교육관계 조례에 평생교육의 규정을 새로 천가하게 되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 규정했다. 또한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중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모두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 향상하게 함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의의를 거듭 천명하였고, 새로운 교육이념으로 천명된 것이다.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교육의 민주화, 자율화가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교육자치제 실시, 학교 운영의 자율화, 교직원단체의 자율화 등의 시책의 추진되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의 차원에서 전개를 의미한다. 1997년

12월 제정된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은 제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인격도약,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과 민주 국가의 발전 이바지하는 국가 차원의 이념, 또는 인유공영의 이상 실현이라는 세계적인 이념은 한국의 교육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꾸준히 재음미되어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이 시대이변(최순복,2000)화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며 새롭게 전되어 왔다.

2009년 제정된<평생교육법>제4조에서 평생교육 이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2)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인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안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절 법제도의 측면

한국교육에 대한 법규는 교육부소관 법만 해도 법률은 44개 있고 시행령은 74개, 시행규칙은 61개 있다. 교육부소관법률만 하면 평생교육의 법률은 7개, 시행령 8개, 시행규칙 7개이다. 교육부 관련법은 20개이며, 기타 부처 관련법은 42개이다. 국가의 기본 대법인 헌법은 교육기본권과 교육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교육의 관한 기본조항인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기본권과 아울러 교육의 기본원칙과 대학교 자치제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헌법 제 31조 5항과 6항에서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평생교육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교평생교육에 관한 법제는 하나의 단일법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여러 관련법령(예컨대 교육기본법, 사회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 진흥법 등)에 분산되어 있다. 그런데 1982년 실시하던 「사회교육법」이나 2000년 실

시한 평생교육법은 한국 대학교평생교육의 기초법이다.

1980년 헌법에 평생교육조항을 입법한 이후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1982년에는 1950년대부터 미루어 오던 사회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평생교육을 위한 법제화를 마련하였다(최순복, 2000). 그러나 이법체제는 1949년에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인 현행 교육법과의 관계에서 교육법이 학교교육만을 규정함에 국한되어 있고 사회교육법은 그 적용범위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 등이 너무 미약함으로 인해서 평생교육관련법체제의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

원래의 사회교육법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문교행정의 변두리에서 겨우 명색만을 유지하는 정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법이 위계상으로는 기존의 교육법과 같은 위치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교육법의 하위 법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한국의 교육법은 명칭만 교육법일 뿐, 내용상으로는 학교교육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관계법의 기본체제를 전면 개정하여 교육기본법과 그 밑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리고 사회교육법을 두었다. 더욱이 사회교육법은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한 제3차 교육 개혁안에서 1996년 8월 20일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평생학습법으로 확대·개편하도록 제시되었다. 평생교육법 제정 안에 대한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1998.7)와 입법예고(1998.9)를 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평생학습법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법의 명칭을 평생학습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였다. 이것은 교육기본법 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같이 「교육법」으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 체제는 평생교육법이지만, 운영은 평생학습체제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국의 사회교육법이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 3848호로 제정·공포된 후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으나, 급격한 사회교육법의 전문을 개정하여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3호로 평생교육법을 재정·공포하여 2000년 3월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총 5장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을 부분 폐지 및 보완하고 당초 평생학습법 시안에서 제안한 유·무급 학습 휴가가 및 교육비 지원, 평생교육 센터, 강사정보은행제, 사내대학·원격대학 등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다양한 평생학습기회가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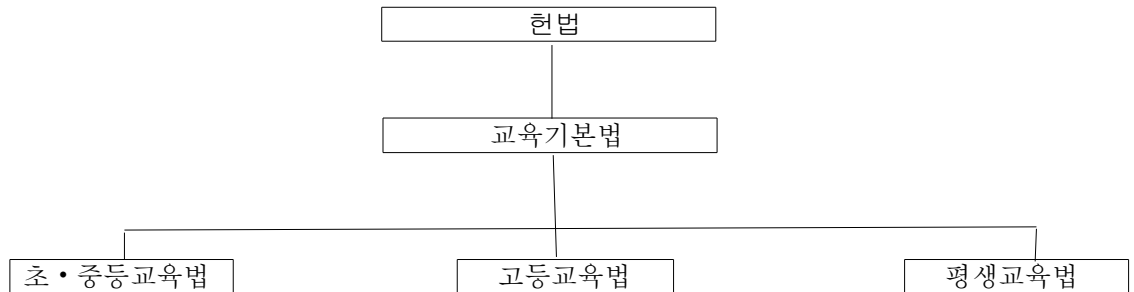
평생교육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제4장 평

생교육사,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6장 문자해득교육,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
 • 인정, 제8장 보칙을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법의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기초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의 용어정의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법의 기본체제를 살펴보면<그림 1>과 같다. 즉 한국의 평생교육법은 그 범위가 학교교육을 제외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법의 체제상 교육기본법 아래 초·중교육법, 고등교육법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국의 평생교육법 기본 체계

제3절 교육기관과 학사운영의 측면

1. 실시 기관

평생교육기관이란 개인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통칭한다. 대학교평생교육기관은 대학교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말한다. 평생교육

을 실시하는 주체로서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평생교육법 제2조 2호). 대학교평생교육의 기관은 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일반대학 내 야간학부, 그리고 독립 대학교평생교육 기관(산업대학,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사내대학 등) 몇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은 대학교평생교육 실시하는 주요 기관이다.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 되어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 시설은 총 390개교 대학교 378개교 로 19,507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622,159명 있다. 한국의 일반대학교 내 전일제학과 설치할 뿐 아니라 야간학과도 개설하고 있다. 전국 모두 419개 고등교육기관 중에는 2개교 야간학과만 운영하고 있고 276개교는 주·야간학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독립 대학교평생교육기관 중에는 산업대학교 18개교 있고 원격대학교 17개교(대학교 15개교, 전문대학교 2개교), 방송통신대학교는 1개교, 사내대학교 1개교 등 운영하고 있다.

2. 과정 형태

한국 대학교평생교육의 과정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여러가지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방식은 크게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교 교수나 특정분야 전문가의 추천에 의해서 개발되는 경우, 둘째, 이미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을 빌려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 셋째,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과정을 개발하는 경우, 넷째, 대학교 내 다른 기관에서 실시되어 온 것을 평생교육원에서 그대로 흡수하는 경우, 다섯째,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제도에 포함된 교과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여섯째, 외부 기업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는 경우, 일곱째, 학습자들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는 경우이다. 이런 한 대학교평생교육 과정은 현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6,756개 과정 이외에도 단과대학, 대학원, 박물관, 연구소 등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7,000개 과정을 훨씬 상회한다.

대학교평생교육의 과정은 교육목적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1)일반교양 및 문화·취미 과정, (2) 직업 및 자격 관련 전문교육과정, (3) 학위 및 학점취득 과정, (4) 지역사회봉사 과정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3. 대학평생교육 학사운영

학사운영은 학생의 전형, 입학, 등록, 출석 기록, 성적 심사, 진급 유급, 휴학, 복학, 퇴학, 전학, 상벌, 졸업 등에 대한 관리이다. 한국 대학교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이념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발전, 나아가 사회발전을 위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제공한 형식교육이다. 비 학위 과정은 물론 아무 제한도 없이 지역주민들이 다 입학하고 공부할 수 있다. 비 학위교육의 학사관리도 복잡하지 않다. 한국 대학교평생교육에서는 비학위교육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 학위교육의 비율은 너무 낮다. 그런데 중국 대학교평생교육에서 학위교육은 주요 교육형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학위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사례로 학사운영과정을 설명하겠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원격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지난 35년간 열인 교육의 산실로서 한국 고등교육의 튼튼한 한 축을 이루어 왔다.

(1)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법령에 의거 위 제11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한국 초·중등 교육(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학습방법

① 방송강의, 방송대의 주 강의방식으로서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② 인터넷 방송강의, 라디오 및 TV 방송강의, 녹음강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개별 학습시스템으로 나의 학습실, 학습전보공유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습 진도를 조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생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TV, 라디오 등의 기존 강의를 강의요약 슬라이드와 함께 학습할 수 있다.

③ 원격영상강의, 교수와 학생간 공간적 거리를 극복하고 실제 면대면 교수학습 환경과 같은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호작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교육시스템이다. 이는 2000년 정보통신부 정보화 지원사업 과제로 채택된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현재의 지상 전용망에서 위성망을 이용한 다채널 쌍방향 원격교육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④ 출석수업, 지역대학교에서 한 학기에 3과목, 8시간씩 주말 혹은 주간과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출석 수업은 학생들이 교수와 면대면 수업을 받는 소중한 시간으로 원격교육과 함께 2배의 학습효과를 드리는 제도이다.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출석수업 대체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⑤ 녹음강의, 방송강의를 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하여 자습에 편리하도록 녹음테이프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강의방법이다.

⑥ 특별강의, 보다 진보된 지식습득을 위하여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교양 및 전공교과목 특별강의를 실시한다. 매학기 1회 이상 지역별로 실시되며, 원격영상강의를 통해서 이뤄지기도 한다.

⑦ 다양한 교재도구, 현직 종사한 교수뿐만 아니라 외부의 유능한 집필진에 의해 저술되는 교재는 교내 출판부에서 직접 인쇄교재, 전자교재, MP3, CD-ROM 등으로 발간된다. 특히 자학자습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져 방송대 학생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습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⑧ 인터넷 코스웨어 및 학습자료, 국내 최초로 <컴퓨터개론>, <한국복식>, <영어음성화> 등의 교과목을 CD-ROM 타이틀 또는 인터넷 코스웨어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방송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각종 학습 자료와 학사안내, 학교소식, 학보, 상담 등 대학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⑨ 인터넷 강의, TV, 라디오, 녹음강의와는 별도로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강의이다. 인터넷 강의에서는 풍부한 학습자료, 동료 학습자 및 교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3) 시험 성적평가방법

방송대학교에는 학생들의 학습향상과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 시험 제도를 많은 종류를 운영하고 있다. 매 학기마다 출석수업 시험, 출석수업 대체시험(출석수업 불가능자, 출석수업 참석지 않고 시험에 의해 평가, 신청자에 한해), 중간시험, 과제물 등우+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비정규학기로 운영되는 하계, 동계 계절수업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성적은 A+.....F 까지 13등급으로 분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각 과목의 성적은 D-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C+ 이하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평점은 4.3만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4) 학사운영 방법

“방송대정보센터”를 통해 수강신청, 성적조회, 시험정보 조회, 학적관리 등 모든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 인터넷만으로 학사 업무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다.<표1 참조>

<표1>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정보센터 학사운영

등록	학기 수업 대상자 조회 및 등록자 조회 등 학기 등록에 관한 내용 들을 조회 관리할 수 있다.
수강	수업 수강 신청 및 출석수업 등 수강에 관한 내용들을 조회 관리할 수 있다.
수업 시험 정보	선택 학기별 수강 과목의 수업과 시험정보를 제공한다.
성적	시험 정답 조회에서부터 학년 학기별 성적 조회 등 성적에 관한 내용을 조회 관리할 수 있다.
계절 수업	계절수업 대상자들의 고지서 발급에서 수업과 시험 및 성적에 관한 모든 내용을 조회 관리할 수 있다.
학적	학생들의 학적 조회 및 휴학, 재입학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졸업	논문 및 논문대체 대상자조회/논문 계획서 제출/논문심사결과 조회/논문 대체결과 조회/논문대체심사기준조회
주소 변경	학생 주소 변경 등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주소가 정확해야 학보가 배달될 수 있다.

증명 발급	학생 증명발급을 신청하고 신청한 증명서 발급 진행 단계를 조회할 수 있다.
----------	---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knou.ac.kr/>

(5) 휴학/복학/재입학

휴학은 종등록 후 3개 학기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휴학 처리된다. 연속 4개 학기 이상 휴학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후 등록한학기를 휴학 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 정한 총 수업일수(방송강의기준)의 1/2 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원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금을 전액 유보된다.

복학은 휴학 기간 동안에는 매학기 등록고지서가 발부된다. 휴학 처리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을 함으로써 복학 처리된다. 단, 연속 4개 학기 미 등록시에는 제적되므로 제적되었을 경우 복학이 아닌 재입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입학은 재적생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2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허가된다 (제적사유: 징계에 의한 제명, 정당한 사유 없이 4개 학기 연속 미등록, 자퇴 등). 재입학 신청 자격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서 제적된 자(편입생 포함)로, 과거 재입학 사실이 없거나 1회인 자(제명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자)이면 가능 한다. 재입학 허가 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입학이 취소된다.

(6) 졸업

84학점 이상 취득할 경우 졸업논문을 작성·제출할 수 있다. 졸업논문 대체신청 제도 실시하고 있다. 학과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 자격증 취득자, 인정시험 합격자 등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체 인정해 준다. 140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제4절 행·재정지원 측면

1. 대학평생교육의 행정 체제

대학교평생교육 행정조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가기본교육제도와 교육부에 대해 조직을 검토하기로 한다.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 교육제도는 교육지방 자치제이다.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다.

한국의 교육부는 조직은 크지 않지만 한국정부에서의 위상은 높은 편이다. 교육부장관은 국가부총리 겸임하고 있고 국가 각 부처 업무를 협조하여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조치는 실시하기를 위해 공동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즘 한국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 겸 국가부총리는 교육부를 비롯하여 12개 부처의 장·차관을 소집하고 회의를 열고 전문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했다. 평생교육도 교육부만 담당한 업무 아니고 다른 부처 공동 협조해야 한다.

한국의 평생교육관련 행정제도를 볼 때 사회교육 행정기구의 첫 출발은 1945년 11월에 미군정청 문교부 학무과 내에 성인교육계가 창설된 것이었다. 다음해 1월에 성인교육계가 과로 승격했으며, 동년 4월에는 성인교육국으로 승격하였다. 1948년 7월에 성인교육과 교화국이 통합되어 사회교육국이 됨으로써 문교부 직제상 사회교육이라는 용어가 공식화 되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됨과 동시에 사회교육국은 해체되었고 문화국에 속한 성인교육과로 편입되었다. 1961년 이후 문교부는 그 조직이 더욱 축소되었고, 그 아래 속했던 학무국, 학교관리국, 체육국, 문예국의 4개국 중에서 사회교육업무는 문예국 아래 사회교육과로 속하게 된다.

5.16군사정변 이후 문예국과 체육국이 통합됨으로써 문예체육국 아래 속하게 되다가 1970년에는 와서 다시 사회교육국으로 승격되는 역사의 길을 걷게 된다. 또한 1978년에는 사회교육국이 사회국제교육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안에 재외국인 교육 등의 업무를 함께 맡게 된다.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때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뀌고 1996년 7월 교육부 직제 개편을 통해 사회국제교육국이 평생교육

국으로 변경되었다. 1999년 평생교육법의 제정 이후 이 기구 오히려 축소되었는데, 명칭은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2004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 직제는 다시 인적자원 정책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정책국, 평생교육직업교육국, 대학자원국은 각각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및 인적자원관리국으로 개편되며, 평생학습정책과는 학술진흥과, 산학협력과와 함께 인적자원개발국 아래 남게 된다. 2005년 이러한 직제는 다시 개편된 었고, 평생학습국의 부활과 함께 그 밑에 평생학습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여성교육정책과, 산학협력과가 속하게 되었다(한승희,2006).교육과학시술부 본부 직속 조직(인원)은 다음<표2>과 같이 나타나다.

<표 2>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조직 직제

교육과학기술부	실	1. 기획조정실 2. 과학기술정책실 3. 인재정책실 4. 학술연구정책실
	국	1. 평생직업교육국 2. 학교지원국 3. 교육복지국 4. 원자력국 5. 국제협력국
	관	1.정책보좌관 2. 감사관 3. 정책기획관 4. 과학기술정책기획관 5. 정책조정기획관 6. 거대과학정책관 7. 교육선진화정책관 8. 미래인재정책관 9. 인재기획분석관 10. 기초연구정책관 11. 학술정책관 12. 대학지원관 13. 학교자율화추진관
	과	1. 기획과 2. 시설과 3. 인사과 4. 운영지원과 5. 과학기술정책과 6. 과학기술전략과 7. 과학기술문화과 8. 정책조정지원과 9.투자분석기획과 10. 거래과학정책과 등 60개
	팀	1.민원조사팀 2. 연구감사팀 3. 사학감사팀 4. 교육시설지원팀 5. 대학자율화팀 6. 융합기술팀 7. 지방교육재정팀 8. 원자력방재팀 9. 원자력통제팀
	단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

출처: 한국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대학부설 평생교육은 한국 원광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행정조직은 평생교육원 산하 여학원이 있으며 현재 원장 1명, 부원장은 2명, 팀장은 2명, 직원4명, 연구원 3명, 조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평생교육사와 대학평생교육의 교수요원

평생교육사는 그기간에 ‘사회교육사’,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교육간사’, ‘스태프’, ‘교육실무자’, ‘프로그램’, ‘트레이너’ 등의 여러가지 용어로 불려 왔다. 이후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평생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사회교육전문요원’ 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1999년에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뀌었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담당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제고를 통해 양질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교육법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로 변경하고, 그 역할과 기능도 기존의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식 및 평가 업무전담에 교수역할을 추가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2,3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평생교육사 제도는 평생교육현장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학습요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그 요구 수준도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의 평생교육기관이 전문화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배치, 연수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격제도가 확립되었다.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 질 관리등과 더불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체 또는 시설의 종사자가 10인 이상이고, 동시에 300인 이상을 교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시설, 연간 교육인원이 3,000인 이상인 평생교육단체 또는 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의 교원을 보면 대학교평생교육의 강의는 본교의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분야에 따라 외래교수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 각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대학교과 교과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본교 전임교수보다 외래강사 및 전문 강사에 더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정완에 의하면 대학사회교육원의 교·강사현황은 전임교수 보다 외래강사 의존률 41.9%, 전임교수 의존율은 19.4%로 1-2명의 전임교수가 있는 것을 나타냈다.

3. 대학평생교육 재정 지원

평생교육 재정은 교육재정의 일부분으로서 국민의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제정의 주체는 학교교육제정 주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적이다. 학교교육재정은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하위 조직인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을 중심으로 확보·배분·지출되고 있는 것에 비해, 평생교육재정은 교육과학기술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와 지방단체에 의해서도 상당부분 지원되고 있다.

요즘 지방자치 단체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평생교육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평생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시·도 교육청이 학교교육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의 여러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규모는 84,884,763백만원이며 그 중평생교육 예산의 총 규모는 1,595,40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8%를 차지한다. 전체 시·도 교육청 총 예산규모는 25,854,106백만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평생교육 예산의 총규모는 96,59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37%인 것으로 나타났다(장덕강,2007).

이렇게 보면 한국 매년 평생교육에 대한 총체 예산은 적지 않은 평인데 직접 대학교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많지 않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16조는 다음과 규정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

다.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
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학교평생교육은 평생교육중의 선호
도가 높아서 인기도 많아졌다. 국가는 직접 재정지원 별 없지만 학습자들은 국가
의 지원금을 받고 수강료 등 형식으로 대학교평생교육원이나 대학교평생교육기관
에 내면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제4장 중국 대학평생교육체제

제1절 교육이념

마르크스 레니주의는 사회주의국가의 기본 지도사상으로서 중국 건국의 이념적 기반이 되어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마르크스 레니주의지도 하에 전개되었다.

1949년 9월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 1949년에서 “인민정부의 문화교육 사업은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국가 건설의 인재를 양성하고 봉건적·매판적·파쇼적 사상을 숙청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상을 양성함을 주요임무로 해야 한다.” 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건국초기에 전국 교육 사업에 지도적 역할을 끼친 교육 중점이었다. 이중점에 따라 종합4년제 대학의 양성 목표는 “고급문화수준을 갖고 현대과학기술을 정통하고 성심성의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고급건설인재를 양성함” 이란 것이고 전문 대학의 양성목표는 “현대과학기술을 정통하게 하고 성심성의로 신민주주의건설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함” 이라고 하였다.

1957년 2월에 모택동 국가주석은 최고국무회의에서 “우리의 교육방침은 수교육자에게 덕육, 지육, 체육 등 여러 면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사상을 갖게 되는 노동자를 재양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모택동이 교육 목적에 대한 제안은 20여 년이나 계속 사용해 왔다.

1981년에 <건국 이래 당의 약간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中共中央, 1981) 에서 건국 이래의 교육목적에 대하여 심하고 전면적인 반성을 하였다. 1982년에 제정한 신 「헌법」의 제46조에서 “국가는 천년, 소년, 아동을 배양하고 도덕, 지력, 체질 등 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중공중앙·국무원은 1993년 2월에 정식으로 반포한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 중에서 “교육개혁과 반전의 근본 목적은 민족 자질을 높이고 인재를 많이 양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 각급 각 유형 학교는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봉사해야 하고 생산 노동과 서로 결합해야 하고 지덕체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한다’ 는 방침을 철저히 실행하여 교육의 질을 1990대에 한 단계를 더 올라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명확히 “2개 필

수”인 임무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덕체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건설자와 후계자 양성한다는 목표도 제기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지도 가치를 갖게 되었다.

1995년에 제 8차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중에서 중국의 교육목표는 “지덕체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9년에 반포하여 실행한 <고등교육법>중에서 고등교육 (대학교평생교육을 포함: 필자주)의 지도사상, 교육목적과 주요임무를 확립하였다. 제3조에서 “국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을 지도로 하여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 원칙에 따라서 사회주의 고등 교육 사업을 발전시킨다.”고 하였고 제4조에서 “고등교육은 반드시 국가의 교육 방침을 철저히 실행하여야 하고 사회주의 현대와 건설에 봉사하여야 하고 생산 노동과 서로 결합해야 하고 지덕체 전면적으로 발전된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제5조에서 “고등교육의 임무는 창조성과 실천 능력을 갖게 된 고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문화를 발전시켜서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촉진 시킨다”고 하였다.

제2절 법제도의 측면

중국에서는 건국 이래 ‘성인교육’의 호칭으로 주로 문맹자교육과 재직교육 등이 실시되어 왔다. 문화대혁명(1966~76년)이후 ‘개혁개방’의 시대를 맞이해 경제발전과 함께 성인교육도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평생교육 관련법을 살펴보면 1987년 국가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성인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은 국무원에서 승인되어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성인교육 정책의 기본방침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교육법(1993년), 직업교육법(1996년), 고등교육법(1998년)등이 있으며 성인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일시적으로 침체된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경제발전이 이바지하는 인재양성의 책무를 담당하기 위해 1993년 ‘중국교육개혁과 발전요망’에서 ‘평생교육’이 새로운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1995년 ‘교육법’의 재정공포로 국가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 정식으로 자리 잡았다. 위 교육법 중 성인교육에 관해서는 제11조 “국가는 평생교육 체계의 정비, 확충에 힘써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다양한 형식의 성인교육 발전과 국민에게 적당한 형식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업무교육과 평생교육을 받게 하고 고무해 장려한다.” 라는 성인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이념의 현실을 지향하는 방향성이 명기되어있다. 또한 20조에서는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사회진보의 요구에 적응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각 수준의 각종 교육의 협조적 발전을 촉진하고 평생교육 체계를 건립하여 완성시킨다.” 제41조에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를, 사회조직은 시책을 강구해서 공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조건의 창조를 고무해 장려한다.” 라고 평생교육 체계의 확립과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서 들고 있다. 또한 1998년 제정 ‘21세기를 향한 교육법 진행 행동계획’에서는 “국가는 종합적 국력과 국제 경쟁 능력은 점점 더 교육의 발전과 과학기술, 지식 혁신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어가면서 교육은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지위에 있으며 현대 정보기술은 교육에 있어서 광범위한 응용과 교육계통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은 교육발전과 사회진보에 공통적인 요구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上田 孝典, 2002).

1996년에는 ‘직업교육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 가운데 제7조에 “국가는 시책을 강구해서 농촌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소수 민족지구를 원조해서 국경 근처의 빈곤지구에 직업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시책을 강구해서 여성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업자가 받고 있는 각종 형식의 직업교육을 조직하며, 장애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원조한다.” 고 되어 있다. 제13조에서는 “직업학교 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 직업학교 교육으로 분류한다.” 제14조에는 “직업훈련은 취학전 훈련, 전직 시 훈련, 재학생 훈련, 담당 후 훈련 및 타 직업성 배훈을 포괄하고 실제 정황을 기반으로 초급, 중급, 고급 직업 훈련으로 나뉘서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었다. 즉 지금까지 성인교육이 담당하고 있었던 직업훈련 제도는 ‘직업교육’ 으로서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998년에는 ‘고등교육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 ‘고등교육법’ 제15조에 “고등교육은 학력교육과 비학력 교육을 포괄한다. 국가는 라디오, TV, 통신 및 기타 원격교육방식의 채용에 따른 고등교육 실시를 지지한다.” 고 되어있으며 제21조에 “국가는 고등교육 독학 시험제도를 실행하고 시험의 합격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학력증서 또는 기타 학업증서를 발급한다.” 제23조 “고등학교와 기타 고등교육 기구는 사회의 요구와 자신의 교육경영 조건을 바탕으로 계속교육 활동의 실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기존에 성인교육이 담당하고 있던 독학 시험제도나 라디오, TV대학, 성인 고등학교 등이 ‘고등교육’ 의 영역에서 통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성인교육의 영역이 축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교육이 법제화 되고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그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평생교육관련 법들은 그 법적 체계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평이고 이는 계속 수정 보완되고 있다.

제3절 교육기관과 학사운영의 측면

1. 대학평생교육기관

중국 대학교육은 “정규교육과 성인교육을 병행한다”의 방침을 실시하고 있어 고등교육기관도 일반 대학교과 성인대학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2005년 중국의 일반대학교는 1792개, 독립성인대학교는 481개 있다. 독립 성인대학교는 대체로 직공대학, 농민대학, 관리간부대학, 교육대학, 독립 통신교육대학, 라디오·TV대학 등 6가지 나눌 수 있다.

대학평생교육기관 중에는 일반대학교의 역할이 독립 성인대학에 비해 더 중시되고 있다. 현재 전국 1792개 일반대학교에서 성인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2006년 현재까지는 청화대학을 비롯하여 전국 68개 주요대학교에서 사이버대학(원격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2. 대학평생교육 과정형태

중국 대학평생교육에 설립한 과정은 학위교육과정과 비 학위교육과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위교육과정은 성인고등교육, 라디오·TV대학 개방교육, 사이버대학, 고등교육 독학시험 등 4가지 형식이 있고, 비 학위교육과정은 주로 직무훈련, 자격 증서교육, 교양과정, 대학교 후 계속교육 등이 있다.

중국 대학교평생교육에서는 학력교육, 즉 학위취득을 위주로 한다. 개설한 과정은 전일제 대학교에 있는 과정과 거의 같다. 성인교육종의 야간학부만 해도 이, 공, 농, 림, 의, 사범, 재정, 정치, 법률, 체육, 예술 등이 11개 분야에서 870개

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3. 대학평생교육 학사운영

1986년부터 전국 통일적인 성인고등교육 입학시험이 실시되었다. 성인대학교의 모집 범위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동등한 학력을 갖고 신체 건강한 직원과 미취업청년으로 한 것이다. 특히 정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지금 전국 몇몇 대학에서 사이버대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학위교육이나 비학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만약에 학위과정교육을 받으려면 학교에서나 전국적으로 통일적 시험도 보아야 한다. 학사운영에 대해 중국 중앙 라디오, TV대학교를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중앙라디오, TV대학교는 라디오, TV, 문자 교재, 영상교재, 코스웨어,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원격 개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이다. 1978년 2월에 창건하여 1979년 2월에 개학했다. 지금 중앙TV대학교는 전국 통일시험을 보고 입학한 학생도 있고 1999년부터 시작된 개방교육은 거의 무시험으로 입학한 학생도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한 시험을 보고 입학한 학생들은 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어 등록한 후에 규정과정을 공부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학습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대로 무시험로 입학한 TV개방교육 학생들은 학점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필수과목 중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험을 봐야 한 과목도 적지 않다. 과정 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실시한다. 100점 중에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된다.

휴학/복학/재입학은 좀 엄격하고 어렵다. 그런데 일자리나 집 주소 변경의 경우는 전학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입학 후 첫 학기에는 변경할 수 없다. 학습자 개인 신청에 따라 퇴학할 수 있고 후에 입학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재입학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에 이수한 과목은 다시 인정해준다.

학생들은 학적유효기간에는 규정한 과목을 다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졸업을 시정할 수 있다. 학교 측은 학생의 도덕·품행 등을 점검하고 합격하면 국가 인증하는 전과 학력이나 본과 학력 졸업장을 수여한다. 우수한 본과 졸업생들을 선발해서 「중화인민공화국학위조례」(國務院, 1980)와 국무원학위위원회 「대학평생교

육 본과졸업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에 대한 잠행규정」(國務院學位委員會,1988)의 규정에 따라 학사학위도 수여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평가에 통과하지 못해도 다시 기회를 제공해준다. 과목 별 합격자에게는 수료나 이수 증명을 발급한다.

제4절 행·재정지원 측면

1. 행정체제 현황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과학교육 흥국전략’을 실시하고 있어서 정부가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성인교육도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교육부 직제에서 성인교육과 직업교육을 맡은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있고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사이다. 그런데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사는 중등과 중등학력 이하의 교육을 맡고 있고 대학교평생교육의 업무는 고등교육사가 맡고 있다. 현재 중국교육부는 1개 청, 1개 실, 1개 위, 2개 국, 19개 사, 1개 처를 관할한다. 각 청, 실, 위, 국, 사, 처의 명칭은 다음<표3>과 나타나는 것 같다.

<표 3> 중국 교육부 직제 일란

교육부	청(1)	辦公廳
	실(1)	教育督導辦公室
	위(1)	直屬監管黨委
	국(2)	1.離退休幹部局 2.紀檢組、監察局
	사(19)	1.政策研究與法制建設司 2.發展規劃司 3.直屬高校工作司 4.人事司 5.財務司 6.基礎教育司 7.職業教育與成人教育司 8.高等教育司 9.民族教育司 10.師範教育司 11.思想政治工作司 12.社會科學司 13.高校學生司 14.科學技術司 15.體育衛生與藝術教育司 16.語言文字應用管理司 17.語言文字資訊管理司 18.國際合作與交流司 19.學位管理與研究生教育司
	처(1)	中國聯合國教科文組織全國委員會秘書處

출처: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網 <http://www.moe.edu.cn/>

중국 대학교 내 평생교육기관의 조직은 간밀하고 효율적이다. 산둥대학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둥대학교는 1901년 창립하여 1958년부터 성인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에는 교육부가 비준하여 성인교육처를 성인교육대학으로 개편하였고 1999년에는 계속교육대학으로 바꿨다. 2000년에는 국가 교육부허가를 받아 사이버대학교도 성립되었다. 전국 68개 사이버대학중 하나가 되었다. 사이버대학은 원래 존재하고 있는 계속교육대학과 통합되었고 두 개 이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행정조직은 하나만 뿐이다. 2006년 대학교성인학위교육 중에는 75개 본과나 전과 학과를 설치하고 있고 재학생은 4.3만 명(사이버대학생 1.1만 명과 고등교육 독학시험생 4,000명을 포함)이다. 비 학위교육학생은 2000명이 된다. 산둥대학교 계속교육(사이버)대학의 조직은 행정과 협조부서가 하나이고 학적관리부, 성인교육부(통신교육, 약간대학 등 업무를 담당), 사이버교육부, 고등교육 독학시험 관리부, 훈련교육부(비 학위업무 담당), 교육기술부(교육기술지원 업무담당) 등 6개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 기관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행정 관리 체계는 종과 횡으로 형성되어 있다. 평생교육 행정 관리 체제는 중국의 각급 각류 교육행정기구, 기업, 사업단위의 교육행정기구에 설치되어 있고, 예속관계와 권한의 분배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횡적인 관계는 중국 각 정부 부문 업무가 평생교육의 교육행정조직이 종사하는 것이고, 종적으로는 각 부문이 소속 학교의 교육을 학교 급별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의 교육부는 국무원 교육행정 부서로서 전국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교육사업을 통괄 계획하고 있다. 각 직할시에는 교육위원회는 설치되어 있고, 각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이, 각 지방 시, 구, 현에는 상응하는 교육국 혹은 교육판공실이 설치 운영 되고 있다. 평생교육은 중앙의 교육부에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사’ 라는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판공실(사무실), 사자처(교사관리처), 교재처, 덕육공작처(도덕업무처), 종합처, 성인문화기술교육처, 중등직업학교관리처, 중등직업학교 학습지도 처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사의 직무는 일반교육 및 성인 중등직업학력 교육, 성인문화기술교육을 통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중등직업교육의 전공과목과 학습지도 문건을 편제하고, 학습평가 기준 및 지도 업무를 제정하고, 중등직업교육 학습개혁을 지도하고, 교재를 편찬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각종 중등 직업교육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주요 업무는 지역교육, 농촌 성인교육, 농촌 교육 종합개혁, 도시교육 종합개

력, 기업교육 종합개혁, 빈곤 탈피 교육, 근로자교육 등이며, 주로 성인 기술훈련, 성인교육 및 문맹퇴치교육 등을 포함한다(최돈민 외, 2003).

2. 대학평생교육 교수요원

중국에서 평생교육사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 평생교육의 지도요원 전문 양성교육기관도 없다. 대학교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배의 지도하에 일하면서 배운다.

중국에서 대학교 내에 있는 계속교육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은 사실상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육행정기관에 해당된다. 교육기관은 각 학부 이어서 대학교평생교육 교수요원에 대부분은 전일제 학부 교수들이 겸임하고 있다. 일부 특수한 학과는 사회기타 기관이나 사업단체의 우수 인재들도 초청되어 임시교원으로 총당하게 한다.

3. 대학평생교육 재정 지원

중국은 1985년이 이전에 사립대학이 존재하지 않아 대학교 성인교육을 실시한 기관들은 모두 국립대학이었다. 대학교 성인교육을 받는 수혜자들은 모두 다 사회 각 영역에서 우수한 인재 때문에 필요한 경비도 전일제 대학들과 같이 모두 국가가 부담학 있었다. 1985년 9월부터 교육부와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성인교육은 교육비를 지불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비롯하였다. 1985년 이전에 이미 등록한 학생들은 국가에서 교육비를 계속 지원하고 1985년부터 신입생들은 교육비를 지불하고 등록하며 국가에서 예산교육비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江山野, 1994) 그래서 현재 사립대학 성인교육을 받으면 수업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평생교육체제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직업교육은 평생교육체제 중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2003년에 국무원 「직업교육을 개혁 발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결정」(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2003)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직업교육법」에 나온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과 직원훈련을 실시하여야 하

여 상응하는 비용도 맡아야 한다. 일반기업은 직원 월급 총액의 1.5%로 교육 훈련 경비를 추출하여야 하고 사원의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고 훈련 업무가 많고 이윤이 좋은 기업들은 2.5%를 추출하여야 하여 자본금 지출에 넣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사원 교육과 훈련을 하지 않고 개정하도록 명령해도 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현금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가 맡아야 할 직업교육경비를 지불하게 하여 본 지역의 직업 교육에 쓰이게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시 엄격하지 않고 사실상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제5장 한·중 대학평생교육체제 비교

제1절 양국 대학평생교육이념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한·중 양국의 대학평생교육의 이념을 비교하는데 있어 양국 평생교육의 개념의 상용, 교육의 기본이념과 평생교육의 이념 및 교육이념의 강조에 중점을 두었다.

1. 개념 사용 측면

이상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는 40~50년대 교육수준 저하로 인하여 문맹퇴치는 사회교육의 주요형식이었다. 60년대 박정희시대에는 재건국민 운동을 통하여 국민의 윤리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70년대 들어서는 새마을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교육도 많이 실시하였다. 80년대 평생교육개념을 정식으로 등장하였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헌법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사회에서 아직 사회교육개념은 많은 쓰는 편이었고 각색각양의 사회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90년대 말에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평생교육개념을 광범히 사용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백여 년간도 평생교육개념과 비슷한 개념을 많이 사용 있었다. 예를 들어 20~40년대에는 평민교육(平民教育), 향촌교육(鄉村教育), 민중교육(民衆教育), 문맹퇴치교육(掃盲教育)등,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는 공독교육(工讀教育), 노공교육(勞工教育), 통신교육(函授教育), 야간대학(夜間大學)등, 80년대부터는 라디오TV교육(廣播電視教育), 독학시험(自學考試), 성인교육(成人教育), 원격교육(遠程教授與), 계속교육(繼續教育) 등 십 몇 개 비슷한 개념을 나타냈다(李劍平, 2005). 1990년대에 들어와서 평생교육의 개념을 도입하고 사용이 시작되었지만 생활에서 성인교육이나 계속교육 등의 개념을 아직 많이 쓰고 있다. 이상 모든 개념은 교육의 주체, 대상, 수단,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두 정규학교교육 이외 실시하는 교육형식이다.

중국은 1949년 이래 경제적 낙후와 역사적, 정치적 원인으로 교육 수준도 낮은 상태에 계속 처하고 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60~70년대 경제를 급한 속도로 발전시키고 교육도 경이적인 발전되었다. 평생교육의 이념도 중국보다 일찍 도입하

고 현재는 한국의 대학교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완전히 수용하고 완벽한 평생교육 체제도 건립되었다. 중국에서는 아직 성인교육이 단계에 체류하고 있다. 중국 대학교평생교육은 고등교육발전 방침인 「두 발로 걷는다」 이란 고등교육의 「한 발」로서 학위보상교육 단계에 속한다. 알다시피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발전, 나아가 사회발전을 위해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기, 청년기, 성년기, 노년기, 그리고 삶을 끝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습할 필요한 권리에 대응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제공되는 학교와 학교 이외의 가정, 사회, 조직 등의 형식적, 비형식적, 무 형식적 교육을 포함하는 총합적인 교육이다. 중국의 대학교 성인교육은 평생교육의 전부 아니어서 교육의 시간측면 보면 일생중의 성인기에서 받은 교육이고 교육의 대상측면 보면 모든 국민 아니고 재직 중인 성인들만 뿐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대학교는 한국과 달리 완전히 개방된 상태 아니고 분부만 개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교육 기본 이념 측면

대학교평생교육은 한 나라의 교육체제 중의 일부분이고 그 나라의 교육의 기본 이념을 적응해야 한다. 한국의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의 이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교육지도 사상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이고 홍익인간,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 등 개념을 가조하고 국가발전, 일류공영으로 지향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의 교육 목적은 교육법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교육은 마르크스레니주의와 모택동사상(毛澤東思想), 등소평이론(鄧小平理論)의 지도 밑에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하고 생산노동과 결합해야 하고 모든 수교육자를 지덕체 전면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사업 건설자 및 후계자를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으로 보면 중국에서는 교육의 기본 지도이념 마르크스레니주의와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이다. 교육받는 자를 지덕체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도덕교육을 특별히 중요시한다. 교육은 현대화건설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생

산노동과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주의에 비해 사회주의(집단주의 포함), 애국주의 등 개념을 강조한다.

3. 평생교육의 이념 측면

한국에서 쓰고 있는 개념인 ‘대학평생교육’의 상위 개념은 평생교육이고 중국에서 쓰고 있는 개념인 ‘대학성인교육’의 상위 개념을 성인교육이다. 그래서 한국의 평생교육의 이념과 중국의 성인교육의 이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 기존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실시했다. 제4조에서 평생교육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평생교육의 이념) ①모든 국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권이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해준다. 평생교육의 기본 원칙은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고 정치적·개인적 편견을 선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상응한 대우를 부여한다. 중국에서는 「평생교육법」(제정중)아직 반포하지 않지만 1987년 6월에 국무원에서 비준한 「성인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中國教育部,1987)에서는 성인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성인교육은 ① 이미 재직하고 있고 또는 전직해야 하겠는 노동자, 농민, 간부, 전문기술자 또는 기타 현직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추는 직무훈련을 실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치사상, 직업교육, 문화지식, 전문기술과 실제능력 등 면에서 직무 규정의 요구에 달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② 현직종사자 중 초·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초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③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나날이 새로워진 과학기술을 적응하기 위해서 대학교육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④ 문명 향상의 과학적인 생활방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신 문화생활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각색각양의 사회문화와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이념 차이가 존재뿐만 아니라 교육의 대상도 다르다. 한국 대학교평생교육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고 중국 대학교평생교육은 현직종사자를 위주

로 한다.

제2절 양국 대학평생교육의 법규와 제도 비교분석

본 절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학평생교육의 법규와 제도를 비교하는데 있어 양국의 대학교평생교육을 관련한 법규, 법적 체제, 법규의 적용범위, 기본교육제도, 대학교평생교육에 관한 행 체제에 중점을 두었다.

중국의 「성인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줄이말: 「결정」)은 대학교평생교육의 기초 법규로서 한국의 평생교육법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뚜렷하다.

한국의 「평생교육법」과 중국의 「결정」(평생교육법의 역할 해당)은 적용범위가 비슷하고 학교 이외 교육을 적용하며 교육기본법의 하위에 위치하고, 학교교육법과 같은 위계를 갖는다. 그리고 대학교평생교육과 관련된 법규는 하나의 단일 법규 아니고 여러 관련 법률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대학교평생교육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1980년에 공포된 헌법을 들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고등교육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대학교성인교육에 관련된 법률은 헌법, 고등교육법, 민판교육법, 직업교육법, 학위조례, 고등교육독학시험조례, 성인대학설치의장행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양국 법규와 제도에는 차이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에서는 법률체제가 완벽하게 가지고되어 있고 교육의 모든 제반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다 갖추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후에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아직 진행 상태에 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도 아직 제정되지 않아 교육부의 공무서로 대신하여 해당업무를 관리 하고 있다.

둘째, 교육의 기본제도 보면 한국의 헌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교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한국의 교육기본법 제5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교육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학교평생교육의 실시 주체인 대학교도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인구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어렵다. 그래서 교육의 관리제도가 지방마다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처럼 모든 교육을 지역에 일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중앙집권적 제도와 지방자치제(中央統一領導, 地方分級管理)”의 원칙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앙이 교육기본 정책이나 원칙적인 차원에서 전국에 통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은 이 기준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여 교육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체제인 것이다.

중국 대학교평생교육 실시하고 있는 주체인 대학교의 설립 주체는 교육부, 노동부등 국무원 다른 부서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기 때문에 행 체제도 복잡하다. 그래서 대학교는 교육부와 다른 국가부문, 또는 교육부와 지방정부 두 가지 측면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셋째, 국가는 대학교평생교육의 관리방식을 보면 한국에서는 법률이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어서 주요 관리수단으로 되었고 다른 교육정책도 제정하기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학교평생교육에 관한 현의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방식은 상급기관의 명령이나 공문서 등 이다. 관료체제가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이나 대학교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많아지고 온 사회에서 법제 관념도 강해지고 법률도 점점 중요한 관리방식이 될 것이다.

넷째, 대학교 내 교육행정 보면 한국의 대학교는 총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고 총장은 다양한 임명제 방식(선거 또는 재단선임)을 취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와 달라 대학교 내의 행정 체제는 ‘대학당위원회영도하의 총장책임제(大學黨委領導下的校長負責制)’를 적용하고 있다. 대학의 당위원회 서기, 부서기, 대학 총장, 부총장은 모두 상위기관에서 임명한다.

제3절 양국 대학평생교육기관 및 학사운영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교평생교육기관과 학사운영에 대해 비교하는데 있어 양국의 대학교평생교육 시설현황과 설치하고 있는 과정 형태 및 대학교평생

교육의 학사운영상황에 중점을 두었다.

1. 대학평생교육기관 비교

한국과 중국의 대학교평생교육기관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많은데 다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즉 일반대학교과 독립 평생교육대학교. 한국에서 독립 성인교육 대학교는 주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한 대학들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산업대학교는 18개이고, 원격대학교는 17개, 사내대학교는 1개, 방송통신대학교는 1개 등 있다. 419개 고등교육기관에는 부설 평생교육원이 366개, 야간대학이 2개, 주·야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276개 이다(한국교육과학기술부(2007), 「교육통계연감(2006)·고등교육기관현황. 중국에서는 독립 평생(성인)교육기관은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만 주로 직공대학, 농민대학, 관리간부대학, 교육대학, 통신대학, TV대학 등 6가지 유형을 나누어 모두 481개 있다. 중국에의 1792개 일반대학교는 거의 모두 성인교육대학을 부설하고 있다. 부설 사이버대학교는 68개 있다.

2. 대학평생교육 과정형태 비교

한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달리 중국 대학교에서의 성인교육대학교는 직접 대학교내 모든 학부학과와 연결하고 수업을 실시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 대학교 전일제학생과 성인학생을 두 가지 나누고 교무처는 전일제학생(또는 청소년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성인교육대학교는 현직 종사한 성인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있다.

학과과정의 설치 상황을 비교하면 다 학위과정과 비 학위과정을 구별하지만 각각 차지한 비율이 좀 다르다. 중국에서는 학위교육 과정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비 학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비 학위교육 과정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학교평생교육의 교육과정은 기초·교양과 취미·오락·여가 증진보다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직업기술과 관련 전문교육의 비중이 커가고 있으며, 학위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교육과정도 증가되고 있다.

중국 경우에는 비 학위교육 중에서 직업에 대한 과정은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
가 있어 한국은 반대추이를 보이고 있다.

3. 대학평생교육 학사운영 비교

양국은 학사운영에서 차이점이 뚜렷하다. 첫째, 학생모집에 대해 한국 대학교평
생교육은 비 학위과정교육은 물론 학위과정교육도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다.
예,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경우 입학자격을 구비하면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
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대부분 성인 학생들은 아직 전국적인 통일된 엄격한 시험
을 통과한 후 입학할 수 있다. TV대학교 개방교육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고 대학수
학능력 시험을 보고 입학하여 무시험 형태라고 간주할 수 있다. 고등교육 독학시
험은 아무 제한도 없기 때문에 무시험 전형을 적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학사운영에 비교하면 한국의 학위교육은 학점제 또는 학점은행제를 실시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주로 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점제도 도입하고 있다.
몇몇 대학교에서 성인교육은 학점제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교육의 방법을 보면 한국은 강의와 전공실습 등 다양한 방법을 결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 대학교평생교육은 아직 강의식을 위주로 하고 있다. 교
육매체의 측면을 보면 한국은 인터넷 등 정보매체가 잘 발달되어 있고 교육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등 현대화 교육기술은 아직 광범하
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수업평가를 비교하면 한국경우는 융통성 있게 학습태도, 출석, 시험 등
다방면 평가방식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경직된 시험평가 방식만 사용
하고 있다. 한국은 규정된 학점(본과 경우에는 140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
고 중국은 규정된 과목을 통과하고 규정된 연한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제4절 양국 대학평생교육 행·재정 지원 비교 분석

한국과 중국은 대학평생교육의 행정과 재정체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교육부는 다른 부처보다 위상이 높고 교육부장관도 국가 부총리 직

무를 겸임하고 있다. 교육부 안에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학습국도 수석국(首席局)이라고 하고 대학교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이나 업무들을 맡고 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교육부 안에는 평생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조차 아직 없어서 각각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사, 고등교육사 등 두 개 부서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둘째, 대학교 내 평생교육조직을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평생(사회)교육원만 설치하고 있고 조직도 간단하고 업무도 일관된 편이다. 아직 정규학위교육을 실시할 수 없고 비 학위교육만 하고 있다. 중국의 대학교에서는 계속교육(성인교육)대학을 설치하고 있고 몇몇 대학교에서는 사이버대학도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학력교육을 실시한다. 비 학력교육은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편이다. 계속교육대학의 조직은 치밀하고 기능도 다양하다.

셋째, 대학교평생교육 요원을 비교 하면 한국은 평생교육사제도 실시하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요원을 많이 양성한 반면 중국에서는 평생교육사제도도 없고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 요원이 많이 부족하다. 교수요원을 보면 한국은 중국과 달라 대학교평생교육의 강의는 본교의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하고 분야에 따라 외래교수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본교 전임교수 보다 외래강사 및 전문 강사에 더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재정체제를 보면 한국에서는 국가측면에서 교육부와 다른 부처가 공동투자하고 지방에서는 각 지방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공동 지원하는 완벽한 재정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체제가 구비하지 않아 재정적 지원의 부족은 평생교육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그 불구하고 양국은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원은 거의 없는 편이고 학습자들이 지불한 수강료는 대학교평생교육의 주요 경비자원이 된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학교평생교육체제를 비교 분석하여 중국 대학교평생교육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비교분석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 2 장은 대학평생교육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선 평생교육과 학습사회에 대해 고찰하고 학습사회에서는 대학교의 역할을 살펴봤다. 이를 기초로 대학교평생교육의 개념을 제기하였고 대학교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평생교육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과 자아 발전, 나아가 사회발전을 위해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기, 청년기, 성년기, 노년기, 그리고 삶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습할 필요와 권리에 대응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제공되는 학교와 학교 이외의 가정, 사회, 조직 등의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 교육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대학은 평생학습사회에서 주로 사회봉사기능, 계속교육기능과 보상교육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교평생교육이란 대학교가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 한다. 즉, 일반적인 교양교육은 물론이고 학위과정프로그램, 전문직의 재교육과정, 시간제, 계절제 과정, 통신교육, 원격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 3 장은 한국 대학평생교육체제에 대해 분석했다. 대학평생교육의 이념, 관련한 법규와 제도, 대학평생교육기관과 학사운영, 대학평생교육의 행정과 재정 지원제도 등 방면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제 4 장은 중국 대학평생교육체제의 대해 고찰했다. 중국은 아직 성인교육이나 계속교육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평생교육의 이념을 도입한지 오래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또 4가지 방면에 중점을 두고 고찰했다.

제 5 장은 한국과 중국 대학평생교육체제에 대해 비교분석했다. 대학평생교육의

이념, 관련한 법규와 제도, 대학평생교육기관과 학사운영, 대학평생교육의 행정과 재정 지원제도 등 방면에 중점을 두고 비교분석한 결과 서로 비슷한 점은 갖고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한국은 구미 교육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용해왔다. 중국은 주로 전통교육과 구소련 교육체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발전해왔다. 평생교육의 이념은 서방선진국들의 교육사상으로써 직접 중국에 도입하면 오히려 수용하기가 어렵고 같은 문화권에 속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과 교훈은 중국에 더욱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은 양국 체제 비교분석을 통하여 중국 대학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했다.

2. 결론

요즘 평생교육을 위한 대학 개방은 고등교육제도 발전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으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중국의 이웃나라인 한국은 1971년 대학에서 개방강좌가 시작하였고, 이어서 방송통신대학(1972), 그리고 개방대학(1982)과 같은 독립된 개방체제 고등교육 기관이 설립되었다.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대학사회교육 활동이 대학교의 의무적인 기능으로 명문화됨으로써 대학교의 평생교육활동은 크게 활성화 되어 제 3의 본질적인 교육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2000년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대학교평생교육도 새로운 단계로 진입되었다. 한국은 아직 저하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대학교평생교육은 일정한 특성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많이 있다. 한·중 양국 대학교평생교육체제의 비교를 통하여 대학교평생교육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이념에 관한 연구와 보급은 확대되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최근 10여 년 동안 평생교육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평생교육, 평생학습은 중국의 교육과 사회의 목표와 이상으로 되었다. 하지만 평생교육 이념은 아직 학계에서나 정부층면에서만 머무르고 사회에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고 평생교육 사상과 관념도 국민들에서 보급되지 않았다. 평생교육체제를 설립하는 것은 정

부에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및 사회의 각 계층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고 모든 국민들은 평생교육의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또는 계속적으로 사회의 전면 발전을 추진하여 전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관한 연구와 보급은 확대해야 한다. 평생교육에 대한 이념과 지식을 많이 전파·보급해야 하고 평생교육의 개념도 보편화하여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의 법률체계가 완벽해야 하고 대학의 자주권도 부여되어야 한다.

한국은 평생교육을 추진하는데 큰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것은 완벽한 평생교육 법체계와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갈라놓을 수 없는 원인이 있다. 평생교육의 입법과 법치문제는 평생교육체계를 설립할 수 있는지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평생교육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대학교평생교육의 행정체제도 개혁할 필요가 있고, 특히 대학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대학 지도자의 임명제를 점차 선거제로 바꾸어서 대학이 독립적인 교육 실체가 되게 해야 한다. 대학 내 학과 설치나 대학의 학생모집에 있어서 학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교평생교육에 대한 협의회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민간교육조직은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필요한 매체이자 필수한 복사전이라고 볼 수 있고 평생교육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갖추고 있다.

셋째, 대학교평생교육 학사운영은 지역 시민들의 특성에 맞추어야 한다.

중국 대학교평생교육 학사운영은 경직되어서 지역 시민들의 특성에 적응되지 않는 실정이다. 학점제나 학점은행제 등 평생교육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학사운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대학교평생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해야 한다. 지금 중국 일반대학교에서의 통신교육, 야간대학교의 교재 편찬은 늦게 착수하여 낙후하고 일반교육적인 경향이 심하게 보인다. 원격교육적인 자원건설과 전자강의 개발은 박약하고 질과 수준도 좋지 않아서 정부고속도로에 ‘도로’가 있는데 ‘차’가 없는 현상이 되게 한다. 대학평생교육의 형태의 맞춰서 관련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교재의 디자인 및 내용은 학과의 과학성과 학생의 심리특징, 교육의 규율, 매체의 특색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학점제나 학점은행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평생교육의 대상은 대부분 이 사회의 각 지역, 각 분야, 각 계층에서 나온 현직종사 인원이라서 직업과 학습사이에 모순이 뚜렷하다. 옛날의 행정제도와 방법을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전일제 학교의 관리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엄격하게 관리하면 성인 학생의 인구

능력을 초과하여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인 학생의 학사운영에 대하여 과감한 개혁을 진행하여야 하며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대학교평생교육은 여가의 특성, 분산성, 자주성, 독학성 등 특징을 갖고 학점제나 학점은 행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셋째, 입학과 졸업제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일된 입학시험은 일부분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될 수 있지만 교육의 효율성만 보이고 교육의 공정성은 구현할 수 없다. 평생교육의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원칙적으로 위배된다. 현재 중국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TV대학 개방교육은 학생모집할 때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는데 학생 모집 비율은 아직 낮고 운영의 형식도 단일하다. 그리고 전일제, 파트타임제, TV대학, 사이버대학, 독학시험제 등은 학습방법만 다를 뿐이지 학습 내용은 다르지 않고 더구나 양성의 질이 저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졸업증서는 대학에서 스스로 디자인하고 인장을 찍고, 책임을 지어야 한다. 졸업장 관리의 개혁은 바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수교육자가 교육을 받을 방식 평당, 교육 내용 평등, 졸업증서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넷째, 비학위 과정의 개발과 학습도시화. 대학교평생교육이 학위교육을 위주로 한 경향을 바꾸어야 하며 다양한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하고 인간성 교양에 이로운 비학위 교육을 개발해야 하여 대학교평생교육의 내용을 풍부하게 시킨다. 대학이 평생교육을 설립할 과정에서 나온 역할을 극대화하고 학습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한국에서 당지 대학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민간평생교육조직이 바르게 발전하는 것을 규범하고 인도하며 그의 잠재 기능을 발굴하는 데 효과가 아주 뚜렷하였다.

다섯째, 현대화 선지 교육방법과 교육기술을 전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중국의 대학교평생교육은 멀티미디어교육 등 현대화 선지 교육방법과 교육기술은 아직 보급하지 않고 전통적인 교육방법·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의와 실습결합, 문제 토의, 사례 분석, 독학·지도과 모의 등 이런 교육방법은 학생들의 흥미를 분발시키고 학생들의 창조성을 양성할 수 있다. 교육수단에 있어서 사이버대학교유근 현대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긴 신 교육방식이다. 사이버대학교육은 현대화 정보 기술을 충분히 사용하고 각종 교육 자원의 우세를 효율적으로 발휘시켜 세계교육발전의 추세에 적응한다.

넷째, 대학교평생교육의 행정과 재정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과 재정지원체제는 대학교평생교육 발전에 중요한 보장이다. 끝으로 한국 평생교육의 발전이 중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행정기관에서 전문적인 평생교육부서를 설립하여야 한다.

중국의 교육부에서 성인교육과 직업교육사가 있는데 중등성인교육이나 중등 이하의 성인교육만을 맡고 있다. 대학교평생교육에 관한업무는 고등교육사에서 맡고 있다. 교육행정기관에는 전문적인 평생교육을 맡은 부서가 있어야 한다.

둘째, 대학교평생교육 전문요원과 교수요원들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 중국은 평생교육요원의 전문성이 미흡하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학과를 설치하여 평생교육 전문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개발부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교평생교육 교수요원에 있어서 겸직한 대하교수는 상과 기업이나 사업단체서 반년이나 1년 연수를 하게 하여야 하고 사회에서 초빙한 교수들은 대학에서 상관 전공의 훈련과 학습을 받아야 한다.

셋째, 재정지원체제 완벽하게 구축하고 투입도 늘려야 한다. 평생교육의 실시는 충분한 자본이 지탱하지 않으면 평생교육체계를 설립할 수 없다. 한국의 교육경비가 GNP에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고 다년간에 평생교육에 전문적으로 지출금을 교부한다. 그리고 한국 평생교육의 재정지원은 거의 모든 부처에서 공동투입하고 오히려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국가 총 예산의 4.73%(2004)를 차지하였다. 반대로 중국 대학교평생교육의 재정지지는 아주 부족하다. 따라서 대학교평생교육의 질은 보증될 수 없고 잘 발전할 수도 없게 된다.

중국 대학교평생교육의 학문적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평가체계의 개발, 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방법의 개발, 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 등 실제 교육활동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두연(1995), “일본 평생교육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성민(2002), 「헌법상 평생교육에 관한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 역(2002), 『대학평생교육 국제비교』, 서울: 지구문화사.
- 김영주 역(2002), 『현대 세계의 평생교육』, 서울: 지구문화사.
- 노종회, 최돈민, 정기수(1996), 『신교육체제 정착을 위한 대학사회교육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 랑그랑(P. Lengrand)(1972), 『평생교육』, UNESCO한국위원회편.
- 박노열(1989), 『한국 및 영국 성인교육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 박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노열(1993), 『한국 대학사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 설립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 박지연(2004), “한국 대학평생교육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종임 외 (2006), 「각국의 평생교육정책」.
- 백명희, “대학의 연장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백주년 기념논총」, 제50집, 교육학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편 1986.
- 서지현(2005), “독일 시민대학의 평생교육학적 의미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성낙돈(1988), “성인교육발전을 위한 한국대학의 과제와 역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교육학연구회, 교육이론, 제3권 제1호.
- 윤미란(1998), “한국 대학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경배(1996), “한국 대학의 성인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양교(2002), 「평생교육 정책론」.

- 이규환, “사회교육의 확대와 그 과제.” 「새교육」, 통권386.
- 이규환(1988), 『서방 선진국 대학의 확장교육과 성인계속교육: 영국, 미국, 서독,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 이현청(1996), “21세기 한국 대학평생교육의 나아갈 방향”, 사회교육연구논총, 제1권, 제2호.
- 이현청(1994), 「21세기 한국 대학평생교육의 나아갈 방향」,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미간행 자료.
- 정구진(2002),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실태분석”, 논문집, Vol.16N0.-.
- 정우현, 김우수, 이무근, 박진규(1992), 『대학의 개방화 추진방안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최돈민 외 (2003), 주요국의 평생교육체제 분석.
- 최순복(2000), "한·일평생교육의 이념 및 체제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최순복(2000), “한·일 평생교육의 이념 및 체제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최운실(1987). “성인학습을 위한 개방형 고등교육 체제 발전 전략.” 「공업기술교육」, 제45호, 서울 : 경기공업개방대학 공업교육연구소 1987.
- 최옥이(2000), “한국 대학평생교육의 미래 예측”,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최정숙, “한국 성인의 고등교육기회와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집, 제4집, 1985.
- 한국교육개발원(1978): 『교육개발의 전망과 과제』 .
- 한국교육인적자원부(2004), 「2004평생교육백서」 .
- 황종건(1994), 『구미 대학사회교육의 모형: 미국, 영국, 캐나다』, 사회교육의 이념과 실제, 서울:정민사.

2. 국외문헌

- 國務院(1980), 「中華人民共和國學位條例」 .
- 國務院學位委員會 (1988), 「關於授與成人高等教育本科畢業生學士學位暫行規

定」。

黃建(2000), "國制視野中的終身學習和成人教育立法研究", 陝西師範大學繼續教育學報, 第3期。

江山野(1994), 「中國教育事典(高等教育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李劍平(2005), 「中國現代教育問題史論」, 北京: 人民出版社。

李劍萍(2005), 『中國成人教育問題史論』, 背景: 人民出版社。

朴福仙(1994), "中國大陸成人教育之研究". 博士學位論文 臺灣政治大學。

日本會社教育學會(1968), 『社會教育の現代化: 大學と會社教育』, 東京: 東洋館出版社。

吳遵民(2003), 『現代中國終身教育論』,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王霖(2005), "關於我國普通高教成人教育改革的思考", 碩士學位論文 湖南師範大學。

中共中央(1985), 「關於教育體制改革的決定」。

中國教育部(1987), 「關於改革發展成人教育的決定」。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1987), 「關於改革和發展成人教育的決定」。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1999), 「面向21世紀教育振興行動計畫」。

Apps, J.W.(1981), *The Adult Learner on Campus Chicago*: Follet.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1973), *Toward a Learning Society* NEW YORK: McGraw-HILL.

Faure, E., et al.(1972),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Paris: UNESCO Press.

Slotnick, H. B.et.al.(1993), *Adult Learners on Campus Washington, D.C.*: The Falmer Press.

Vermilye, D. W.(ed)(1974), *Lifelong leanings: A New Clientele for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Williams, G.(1987), *Towards Lifelong Education: A New Role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Paris: OECD;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행정	학 번	20087771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반효비		한문 : 潘曉飛	영문: PANXIAOFEI	
주 소	조선대학교				
연락처	E-MAIL : papa860626@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한국과 중국 대학교의 평생교육체제 비교 연구 영어: A Comparative Study on the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10년 2월					
저작자: 반효비 (서명 또는 인)					
<h3 style="margin: 0;">조선대학교 총장 귀하</h3>					